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26호 2025. 3. 17.(월)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844호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공포문	4
제1845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5
제1846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0
제1847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6
제1848호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문	20
제1849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22
제1850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24
제1851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공포문	27
제1852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30
제1853호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41
제1854호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43
제1855호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문	47
제1856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56
제1857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62
제1858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65

【규 칙】

제678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70
-------------------------------------	----

【공 고】

제2025-723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2
제2025-735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7
제2025-742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3
제2025-773호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90

제2025-77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유구수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4
제2025-77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3

【고 시】

제2025-39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150
제2025-40호 2025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154
제2025-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공주원로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55
제2025-42호 공주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159
제2025-4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61
제2025-44호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164

【공주시의회】

규칙 제16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72
----------------------------------	-----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44호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45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2”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사용료 등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및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상자는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 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1호에 따른 단수처분에 대해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소멸시효) 상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2. 미납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별표 5 제3호 구분란 제3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신청인	수용가명		수용가 번 호		연락처	
	주 소					
반환금액	반환액		원	과오납금	원	
				총 당 금	원	
반환받을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유 :						
위 과오납금을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수용가와 의 관계 :)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출납원 귀하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46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

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2.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

별표 1,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별	사용량 (m³/월)	m³당 요금(원)				
		2025.	2026.	2027.	2028.	2029.~
가정용	0~20	470	520	570	630	690
	21~30	590	650	720	790	870
	31 이상	960	1,060	1,170	1,290	1,420
일반용	0~100	570	630	690	760	840
	101~300	870	960	1,060	1,170	1,290
	301이상	1,270	1,400	1,540	1,690	1,860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제21조제1항 관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 수수료 = 마을별 운반 단가* + [연도별 수집 단가** × 분뇨처리량(m³)]

* 마을별 운반 단가 = 연도별 운반 단가*** × 마을별 거리(km)****

** 연도별 수집 단가 = 수집 기준 단가 × 생산자물가지수

*** 연도별 운반 단가 = 운반 기준 단가 × 생산자물가지수

**** 마을별 거리는 소재지와 처리장의 왕복거리

- 마을별 운반 단가는 부득이 운반 거리가 추가되는 경우 고시한 연도별 운반 단가를 준수하며 협의하여 징수 가능
- 연도별(분뇨 수집·운반)단가 및 수수료는 매년 1월에 산정하여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
- 분뇨 수집·운반 기준 단가는 5년마다 현실성 반영 재산정
- 생산자물가지수(통계청 자료)는 전년도 12월 물가지수 적용
- 마을별 거리 구분

거리(km)	행정동	마 을 명
5	우성면 웅진동	평목리 웅진1통, 웅진4통, 웅진7통
10	우성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신웅리, 옥성1리 중동1통, 중동2통, 중동3통, 중동4통, 중학1통, 중학2통, 중학3통, 중학4통, 반죽1통, 반죽2통, 반죽3통, 반죽4통, 봉황1통, 봉황2통, 봉황3통, 봉황4통, 교동1통, 교동2통, 교동3통, 교동4통, 교동5통, 교동6통,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산성1통, 산성2통, 산성3통, 산성4통, 웅진2통, 웅진3통, 웅진5통, 웅진6통 검상동 옥룡1통, 옥룡2통, 옥룡3통, 옥룡4통, 옥룡5통, 옥룡6통, 옥룡7통, 옥룡8통, 옥룡9통, 옥룡10통, 옥룡11통, 옥룡12통, 옥룡13통, 옥룡14통, 옥룡15통, 옥룡16통 신관1통, 신관2통, 신관3통
15	이인면 우성면 금학동 옥룡동	만수리, 오룡리 단지리, 방문1리, 방문2리, 상서1리, 상서2리, 도천리, 내산1리, 내산2리, 동곡리, 귀산1리, 귀산2리 금학1통, 금학2통, 금학3통, 금학4통, 금학5통, 금학6통, 금학7통, 금학8통, 봉정동, 태봉2통 옥룡17통, 옥룡18통, 옥룡19통, 옥룡20통, 옥룡21통, 소학동

	신관동 월송동	신관4통, 신관5통, 신관6통, 신관7통, 신관8통, 신관9통, 신관10통, 신관11통, 신관12통, 신관13통, 신관14통, 신관15통, 신관16통, 신관17통, 신관18통, 신관19통, 신관22통, 신관23통, 신관24통, 신관25통, 신관26통, 신관27통, 신관28통, 신관29통, 신관32통, 신관33통, 신관34통, 신관35통, 신관37통, 신관38통, 신관39통, 신관40통, 신관41통, 신관42통, 쌍신동, 월미1동, 월미2통, 금흥1통, 금흥2통, 금흥5통, 금흥6통, 금흥7통, 금흥8통, 금흥9통, 무릉동
20	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금학동 옥룡동 월송동	신흥리, 운암리 율정리, 청룡1리, 청룡3리, 청룡4리, 청룡5리, 청룡6리, 청룡7리 동대리, 한천리, 반촌리, 목천1리, 목천2리, 방흥리, 보흥2리, 대성1리, 대성2리, 옥성2리 신영3리 주미동, 태봉1통, 오곡1통, 오곡2통 신기2통, 상왕2통, 상왕3통 석장리동, 송선1통, 송선2통, 동현1통, 동현2통,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6통, 금흥3통, 금흥4통, 월송1통, 월송2통, 월송3통, 월송4통, 월송5통, 월송6통, 월송7통
25	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옥룡동	주봉1리, 주봉2리, 용성1리, 신영1리, 신영2리 오인리, 수촌2리, 청룡2리, 요룡1리, 요룡2리 보흥1리, 용봉리 신영1리, 신영2리, 호계2리 신기1통, 상왕1통
30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이인리, 목동리, 발양리, 초봉리, 용성2리, 구암2리 대학1리, 대학2리 기산1리, 화은1리, 화은2리 마암1리 두만리, 수촌1리, 유계리 상룡리, 화봉1리, 화봉2리, 북계2리, 석송리 어천리, 오동리 화월1리, 화월2리, 계실리, 호계1리, 해월1리, 해월2리, 고당1리, 고당2리
35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구암1리, 달산리, 산의리 유하리, 운곡리, 견동리 봉명리, 기산2리 마암2리 월곡리 평정1리, 평정2리, 북계1리, 전평리, 운궁리 안양리, 봉현리 가교1리 선학리, 영정리
40	이인면 탄천면	복룡리, 반송리, 이곡리 삼각1리, 광명리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월암리, 내흥2리, 중장3리, 죽곡리, 향지1리, 향지2리, 유평2리 공암1리, 봉곡1리, 봉곡2리, 보물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가산리, 중흥1리, 중흥2리 쌍달리, 장원1리, 장원2리, 보물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죽당리 대중리, 가교2리, 운암1리, 운암2리 산정1리, 동원2리, 백룡1리, 백룡2리, 평소리, 화흥리
45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	만천1리, 만천2리 삼각2리, 장선1리, 정치리, 성리, 송학1리, 송학2리, 국동리 내흥1리, 구왕1리, 구왕2리, 중장2리, 하대1리, 하대2리, 화현리, 금대1리, 금대2리, 상성리, 유평1리 공암2리, 공암3리, 송곡1리, 송곡2리, 하신리, 온천1리 고성리, 어물리, 광정2리, 광정3리, 사현1리, 대산1리 회학리 산정2리, 산정3리, 동원1리, 대룡1리, 대룡2리, 입동리
50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	석남1리, 석남2리, 석남3리, 유구1리, 유구2리, 녹천1리, 백교1리, 백교2리 안영1리, 안영2리, 덕지1리, 덕지2리, 화정1리, 남산1리, 남산2리, 분강리 중장1리, 하대3리, 양화1리, 양화2리, 경천1리, 경천2리, 경천3리, 월곡리 상신리, 온천2리, 학봉1리, 학봉2리 사현2리, 인풍리, 월산1리, 월산2리, 대산2리 월가리, 부곡리 조평1리, 용수리, 쌍대리, 청흥리
55	유구읍 탄천면 정안면 신평면	유구3리, 녹천2리, 신영1리, 신영2리, 동해리 장선2리, 화정2리 태성리 조평2리, 봉갑리
60	유구읍 탄천면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	녹천3리, 신달1리, 신달2리, 입석리, 구계1리, 구계2리, 노동리 가척리 도신리, 덕학리 문천리, 내문리 유룡리
65	유구읍 정안면	명곡1리, 추계1리, 세동리 산성리
70	유구읍	명곡2리, 추계2리, 덕곡리, 문금1리, 연종리
75	유구읍	탑곡리
80	유구읍	문금2리

※ 거리(km)는 마을별 소재지와 처리장의 왕복 거리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47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을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1실 1박(정원 4명 최대 8명 기준)	
	주 중	주 말
숙박비	130,000	160,000

※ 비고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인원은 4인 이하로 제한한다.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구 분		수용인원		요 금		방수	비 고
		정원	최대	주 중	주 말		
초가형	이인관 의당관 탄천관	2명	3명	160,000	190,000	1	구들
전통형	농본관 신토관 불이관	2명	3명	180,000	240,000	1	구들
일반형	계룡관2	2명	2명	110,000	140,000	1	구들
	계룡관1	2명	3명	130,000	160,000	1	구들
	사곡관	2명	3명	130,000	160,000	1	전기난방
	우성관	8명	9명	230,000	290,000	3	전기난방
고급형	유구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반포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정안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신평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양반형	행랑채	2명	2명	50,000	70,000	1	구들
	별 채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사랑채	4명	5명	200,000	260,000	2	구들
	안 채	8명	9명	230,000	290,000	3	구들

※ 비고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1인 이하로 제한한다.

3. 다목적실(백제방) 사용료

- 가. 숙박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 4시간 기준 100,000원이며,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다. 한옥마을 내 입주업체(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라. 공주시 주최·주관일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사용 가능), 16:00이후 퇴실 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오토캠핑장 사용료

- 20,000원 / 1일 1대

6. 야외 바비큐장 시설사용료

- 30,000원 / 2시간 1테이블 (4인 기준)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48호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공주아

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주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공주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
3. 공주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공주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49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0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마을안길, 농로의 기존도로 밋”을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1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같은 법 제50조제3

항의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면허번호					
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청구금액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공주시장 귀하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2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를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로,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를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를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주차장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정책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기준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시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비고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0원	4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	-	-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한정한다.
2.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 가. 연중 (06:00 ~ 22:00)
 - 나. 6시간 이상 주차한 자동차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 다.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수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 주차요금은 조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1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4.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2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80명당 1대
6.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85㎡초 과 135㎡ 이하: 1대 ○ 시설면적 135㎡ 초과: 1대에 13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시 설 물	설 치 기 준
7.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30㎡ 미만] ○ 0.5대 이상
	[전용면적 30㎡ 이상 ~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상 ~ 85㎡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7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00㎡ 이상 ~ 130㎡ 미만] ○ 시설면적 75㎡당 1.4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4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4대 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7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 · 실당 1.5대 이상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350㎡당 1대 (다만,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525㎡당 1대로 한다)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5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터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터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

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85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한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0.5대 이상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로 한다. 다만,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 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관련법 조 문	과징금 금 액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	50만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3호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공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의 협력) 제조업 종사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2.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4호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귀농신고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입일자	년 월 일	
주 소	귀농 전 귀농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	년 월 일		귀농 전 직업		특 기 (자격증)
직장가입	☐ 여	☐ 부	귀농 전입 가구원	계	
농업 외 사업자등록	☐ 여	☐ 부		본인 및 배우자 명	
농업 외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사전에 인지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자녀 명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농지규모 : m² - 사육두(마리)수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m²				
첨부서류	①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② 세대주 및 전입 세대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통장 확인	위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읍·면·동 리 이·통장 (인)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사업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공주시장 귀하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제12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직장가입	☐ 여	☐ 부
			농업 외 사업자등록	☐ 여	☐ 부
연락처					
귀농가족 현 황 (귀농 신고 당시 기준 /전출자 제외)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직업(직장)
	배우자				
	자녀				
	자녀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사항 포함) ⑥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소득 없는 경우)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 장려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실제 거주 및 농지 이용실태) 적격여부 확인					
이·통장	☐ 여	☐ 부	읍/면/동	리 이·통장	(인 또는 서명)
읍면동 담당자	☐ 여	☐ 부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유의사항: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 심의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 회수 및 향후 귀농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 3. 7.)
에서 의결된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5호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카페누리실, 미래학습실, 지혜의 정원 등의 시설 및 그 밖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당로 21(신관동)에 둔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계획 수립·시행·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5. 평생학습 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6. 평생교육 관련부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지원·관리
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0. 평생학습축제 등 관련 행사 개최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등)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 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창

업교육, 기술교육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위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강사해촉) 시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주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에 따른 공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9조, 제10조 관련)

1. 사용료

구분	시 설 명	사용시간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토요일	
사용료	미래학습실 함께배움터 카페누리실 요리창작실 디지털실	오 전(09:00~13:00)	60,000	80,000	
		오 후(13:00~18:00)	70,000	90,000	
		야간(18:00~21:00)	80,000	-	
	음악창작실 미술창작실 도자조형실 나무공예실 재봉창작실 디지털융합실	오 전(09:00~13:00)	40,000	60,000	
		오 후(13:00~18:00)	50,000	70,000	
		야간(18:00~21:00)	60,000	-	
	마음근력실	2시 간/1시 간	10,000/5,000	10,000/5,000	1회 2시간 기준
부대 시설 사용료	냉·난방기	1회	20,000	20,000	난방기 7월~8월 난방기 11월~3월
	빔 프로젝트	1회	20,000	20,000	
기본 수칙	강의실	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1) 기준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료의 20% 가산 2) 기준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료의 100% 가산			
	마음근력실	1. 사용 가능일 및 시간: 평일(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2. 신청대상: 공주시 평생학습 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등 ※ 공주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동아리: 사용료 무료 3. 신청인원: 60㎡이하 / 최대 15명 이하 / 회원명단 첨부 필수 4. 사용시간: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으로 한다.			
	공통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이용 - 영리목적, 개인교습, 정치·종교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제한 - 사전 연락 없이 미사용 시 추후 사용 제한 -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모임) 제한			

※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원)	비 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24시간(12주)	36,000원	시간 당 1,500원
	36시간(12주)	54,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사용료 전액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인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반환 없음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강좌를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사유인 경우	강의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 3. 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6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문화”로 한다.

1. 청소년수련관

- 가.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교류·문화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라.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연구 활동 지원
- 마.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바.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 사.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간 제공
- 아. 그 밖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제7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3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9조의2 에”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로,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를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관계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전체”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은 전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운영 시간)”을 “(이용 시간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일 :”을 “일(화요일~금요일):”로, “22:00”을 “2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일요일) :”을 “(토, 일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17조제3항제2호 중 “본래목적”을 “본래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제2호 중 “시장”을 “청소년의 신청 및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주시 의당로 21(신관동)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공주시 대통1길 57(반죽동)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공주시 무령로 550-53, 2~3층(월송동)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대통1길 69-1 (반죽동)	
공주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공주시 대통1길 69-1 (반죽동)	

[별표 2]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징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대관료

(단위: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비고
		오 전	오 후	야 간	1일		
		09:00~13:00	13:00~18:00	18:00~21:00	09:00~21:00		
대강당 (평일)		60,000	80,000	100,000	240,000	무료	수련관
대강당 (토, 일, 공휴일)		80,000	100,000				
부대시설 사용료	냉·난방비	냉방비 하계(7월~8월) 의무사용 20,000원/회 난방비 동계(11월~3월) 의무사용 20,000원/회				무료	수련관
	프로젝트	20,000원/회				무료	
다목적실 1, 2(평일)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다목적실 1, 2(토, 일, 공휴일)		40,000	50,000				
자치활동실 (평일)	소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소: 1, 2, 3, 4 대: 1, 2, 3, 4
	대	50,000	60,000	70,000	180,000		
자치활동실 (토, 일, 공휴일)	소	40,000	50,000				
	대	60,000	80,000				
강의실 (평일)	소	30,000	40,000	50,000	120,000	무료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	50,000	60,000	70,000	180,000		
강의실 (토, 일, 공휴일)	소	40,000	50,000				
	대	60,000	80,000				
밴드연습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노래연습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동아리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기타 프로그램실		실별 시간당 5,000원				무료	

- (비고) 1. 대강당,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강의실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보며, 1일의 경우에는 3회로 본다.

○ 강습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교육	1일 1개월(4~5주)	5,000~40,000	1회 2시간 이상
전문교육	1일 1개월(4~5주)	5,000~60,000	"
특별교육	1일 1개월(4~5주)	무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 교육인 경우

- (비고) 강습료는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습료의 기준 내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 3. 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7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

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원 기준(제8조 관련)

지원 구분	지원 근거	지원 한도	세부 기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1호	4시간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의료비	제7조제2호	연 100만원 범위 내	1. 병·의원 진료·치료비, 약제비 2. 입원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
법률상담,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	제7조제3호, 제4호	예산의 범위 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
심리상담	제7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교육담당부서)
그 밖의 사업	제7조제7호	예산의 범위 내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 3. 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조례 제1858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혼장려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을 말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혼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제8조의2 제4항 장려금 각 회차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다만, 1차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원 대상이 된다.)

3.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할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장려금 신청 후 150만원(익월 지급)

2. 2차: 1차 지급 1년 후 150만원

3. 3차: 2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의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3(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8조의3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서 (제8조의2 관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핸드폰)			전입일자	____. ____.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핸드폰)			전입일자	____. ____.	
	주소					
공주시 지역화폐(공 주페이)		지급대상자	이름 : 핸드폰번호 :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공주시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2025년도 제1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5. 2. 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5년 3월 17일

공주시 규칙 제678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제3호”를 “조례 별표 5 제 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 별표 5의”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2조의2제4호”를 “제22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9조”를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기초생활수급자””를 “제3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별표 5의”를 각각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5-723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지원항목 문구를 개정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의 복무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
- 제3조 제4항 전단 단순 자구 수정하여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문구류 등 구입에 한정되는 제2항 2호 “사무용품구입비” 지원 규정을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3조 제4항 전단 중 “규칙 제6조”를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로 단순 자구 수정하여 표기 명확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7. ~ 2025. 4. 7.(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41) 840 - 2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32552

- 전화 : 041) 840-2207, 팩스 : 041) 840-3707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 041-840-2207)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2층 자치행정과

ㄴ FAX : 041-840-37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6조**”를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복무) ① ~ ③ (생략)	제3조(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통장은 <u>규칙 제6조</u> 에 따라 해임될 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 「 <u>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u> 」 제6조----- ----- -----. ----- ----- -----.
제5조(지원) ① (생략)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무용품 구입비</u>	2. <u>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25-735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동 지역 단독주택 및 원룸 거주 시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배출방법 변경을 위한 관련 조문 개정 (안 제9조)
-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11조의 2)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7. ~ 2025. 4. 7.(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041) 840 - 8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32552

- 전화 : 041) 840-8605, 팩스 : 041) 881-7681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41-840-8605)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자원순환과

ㄴ FAX : 041-881-7681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조”를 “「폐기물관
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정한 전용수거용기로”를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공공용 쓰레
기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
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른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

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 중 “제16조 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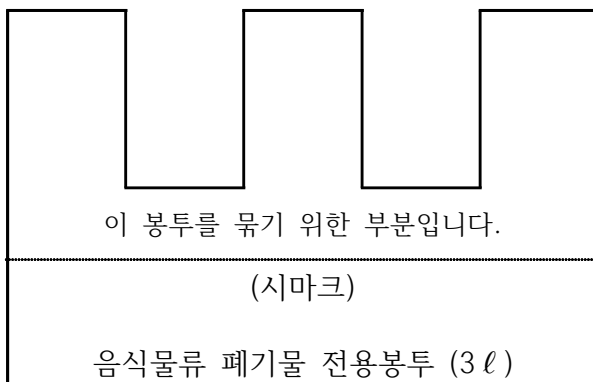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수규격봉투”를 “특수규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폐기물을 각각”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중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규격봉투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에 행군 후(염분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조개(호두)껍데기, 동물 뼈, 채소 뿌리 등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19:00 ~ 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별표 7의 특수규격봉투란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3리터	70원
	5리터	110원

공주시 공고 제2025-742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찾기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내고장 주소찾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입지원금 운영상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제4조 별표)
 - 지급기간, 지급 횟수에 대한 규정 명시화
 - 공주사랑상품권 → 지역화폐로 변경
 - 일부 변경 내용 및 관련 조례 반영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i778ii@korea.kr

- 전 화 : 041-840-8754 / FAX : 041-881-7684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840-87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내고장 주소찾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내고장 주소찾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내고장 주소찾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전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입자 공통 지원 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쓰레기 봉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종합사회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 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우선등록 및 수강료를 전입 이후 3년 이내 1개 강좌에 한해 1년간 면제(1회)											
학 생 전입지원금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고등학생 -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시사랑상품권 지 원(졸업 시까지 최대 3년)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지원 이후 6개월 마다 20 만원 상당 지원)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연 84만원 상당의 공주시사랑상품권 지원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최대 4년)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7만원 상당 지원)											
근로전입 지 원 금		1. 공공기관 직원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시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2.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교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 40만원 상당의 공주시사랑상품권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상당, 1년 후 20만원 상당,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상당 지원, 최대 3년)											
귀농인 지원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인 주택 수리비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전입유치 보상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임대농업인 중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 1명 : 임대료 50% 감면 - 2명 이상 : 전액 감면 다만,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한다.										
	쓰레기 봉투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생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5명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시 쓰레기봉 투 1,000L지원 (연1회)											
	전 입 장 려 금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을 장려하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기관, 기업, 개인 으로 한다. (단, 전입장려금 지급시 전입자 모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천원) <table><tr><th>지 급 대 상</th><th>지 급 기 준 (전입실적)</th><th>지급액</th></tr><tr><td>개인</td><td>5명 이상</td><td>500</td></tr><tr><td rowspan="2">기관· 기업</td><td>10명 이상~30명 미만</td><td>5,000</td></tr><tr><td>30명 이상</td><td>10,000</td></tr></table>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 - 지급방법 : 검토 후 일시금 지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5명 이상	500	기관· 기업	10명 이상~30명 미만	5,000	30명 이상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급액												
개인	5명 이상	500												
기관· 기업	10명 이상~30명 미만	5,000												
	30명 이상	10,000												

【별표】 개정 후

전입지원금등 지원 내용 (제4조 관련)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입자 공동 지원 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쓰레기 봉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종합사회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을 원 하는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1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수강료 1년간 면제(1회)
학 생 전입지원금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학생은 입학예정 증명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고등학생 - 인당 최대 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으로 단, 졸업 시까지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인당 연 최대 84만원 지역화폐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7만원 상당 지원 으로 단,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최대 48개 월 지급 후 종료)
근로전입 지 원 금		1. 공공기관 직원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당 최대 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전입 후 지원금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 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으로 단,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3년 이내
		2.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중 관내로 전입한 사람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한다. - 교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귀 농 인 지 원 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전입유치보 상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관내로 전입하도록 장려한 농업인	- 감면기한 : 신청일로부터 당해연도까지 - 감면내용(횟수 제한 없이 연50만원 범위 내 한정지원) · 1명 전입 유치 시 임대료 50% 감면 · 2명 이상 전입 유치 시 임대료 전액 면제
	쓰레기 봉투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학생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단, 쓰레기봉투 신청 시 신청자 및 전입자 모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명 이상 대학생 전입되어 있을 시 쓰레기 봉투 1,000L 지원 - 전입실적 : 매년 1. 1.~12.31.(1년)까지 전입 유치인원 - 신청기한 : 다음 연도 1분기 이내(연1회) - 지급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5. 3. 17.

공 주 시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4년도에는 재난이 4회 발생하여 피해는 3,427건 2,952백만원이며, 복구는 3,427건 4,44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풍수해 재난은 4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2,952백만원, 복구는 3,427건, 4,44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은 완료되었고 공공시설 복구공사는 진행중입니다.
- 재난발생현황은 풍수해 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풍수해 재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과 22명으로 5년 평균 21명 보다 높은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제팀이 추가 신설되어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8종으로 21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 157개소보다 58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905백만원으로 905백만원 확보되어 100 %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781백만원 보다 123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8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927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01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70백만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보통에 가까우며, 지난해 진단 결과와 같습니다.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공공건축물시설 중 4개소가 내진성능 추가 확보되어 공주시 전체 39.5%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내진보강은 5건 143백만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21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추가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공주시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재난관리기금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재난방지시설 점검·보수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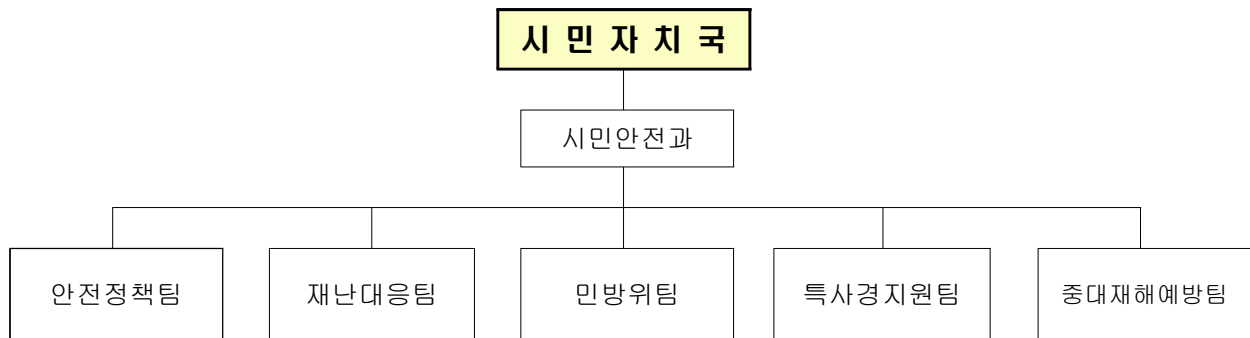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2.23.~3.17.	산불(5건)	-사유시설 : 임야 0.72ha 내 낙엽 등 지피물 소훼	-해당 없음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등
7. 7. ~7. 16.	집중호우	-공공시설: 문화유산 침수 및 훼손	-공공시설 : 문화유산 긴급복구	공공시설 복구완료
7.8.~19. 7.20.~21. 8.5.	호우	-공공시설:하천,도로 등 -사유시설:침수,농작물 등	-공공시설:하천,도로등 -사유시설:재난지원금	공공시설 (추진중) 사유시설 (지급완료)
9.19.~21.	호우	-공공시설:하천,도로 등 -사유시설:농작물,농경지	-공공시설:하천,도로 등 -사유시설:재난지원금	공공시설 (추진중) 사유시설 (지급완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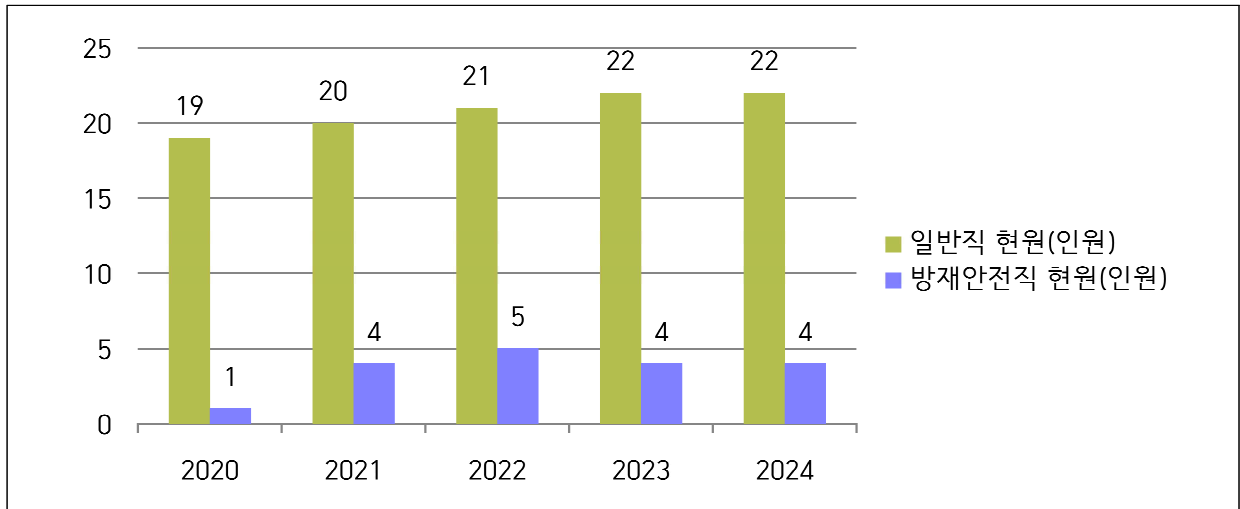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2	22	-	1	5	6	5	5	-
	현원	21	21	-	1	6	8	3	3	-
시 민 안전과	정원	22	22	-	1	5	6	5	5	-
	현원	21	21	-	1	6	8	3	3	-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6	6	-	-	-	1	2	3
	현원	4	4	-	-	-	-	2	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9	20	21	22	22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4	5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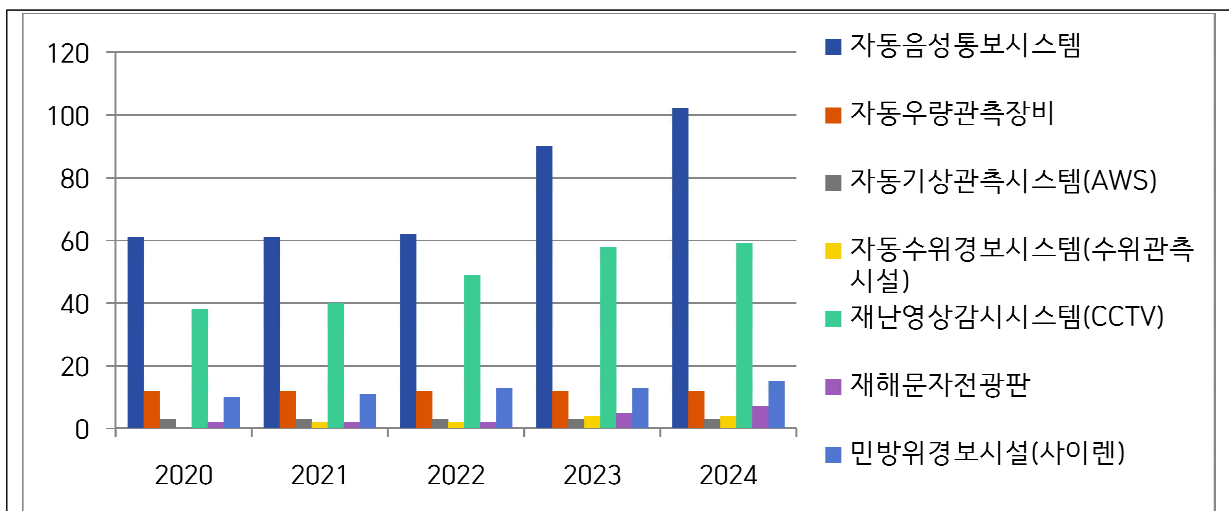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총 계	21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2	유구읍 외 15개 읍·면·동
자동우량경보시설	12	시청, 유구읍 외 10 읍·면
자동우량관측장비	3	유구읍, 정안면, 금흥동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4	사곡면, 이인면, 계룡면, 신관동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59	공주시 금성동 204 등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7	계룡산, 신관금강공원 둔치, 사곡(2), 반포
재해문자전광판	13	유구읍, 시청별관(교동), 옥룡동 정수장, 축협(신관동), 금학동, 월송동, 정안면, 계룡면, 신평면, 의당면 의용소방대, 탄천면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5	교동시철별관, 옥룡동정수장, 신관농협, 유구읍, 금학동, 월송동, 정안면, 계룡면, 의당면 의용소방대, 신평면, 탄천면, 우성면, 사곡면, 이인면, 반포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1	61	62	90	102
자동우량관측장비	12	12	12	12	12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3	3	3	3	3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0	2	2	4	4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8	40	49	58	59
재해문자전광판	2	2	2	5	7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0	11	13	13	15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2개소 추가 등록 및 설치
- 전광판 2개소 추가 설치
-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2개소 추가 설치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시설 증가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기초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과정명	일자	장소	교육기관	비고
제1기 재난안전고위관리자과정	2023.6.22.	대전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1.31.~2.2.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4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2.26.~2.28.	“	7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3.6.~3.8.	“	6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3.20.~3.22.	“	6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4.17.~4.19.	“	5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5.8.~5.10.	“	6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6.3.~6.5.	“	5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6.19.6.21.	“	5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7.17.~7.19.	“	5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8.28.~8.30.	“	1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9.25.~9.27.	“	3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9.30.~10.2.	“	2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10.30.~11.1.	“	2	
재난안전 관리자 과정	2.19.~2.20.	“	7	
재난안전 관리자 과정	4.8.~4.9.	“	5	
재난안전 관리자 과정	8.12.~8.13.	“	3	
재난안전 관리자 과정	12.2.~12.3.	“	2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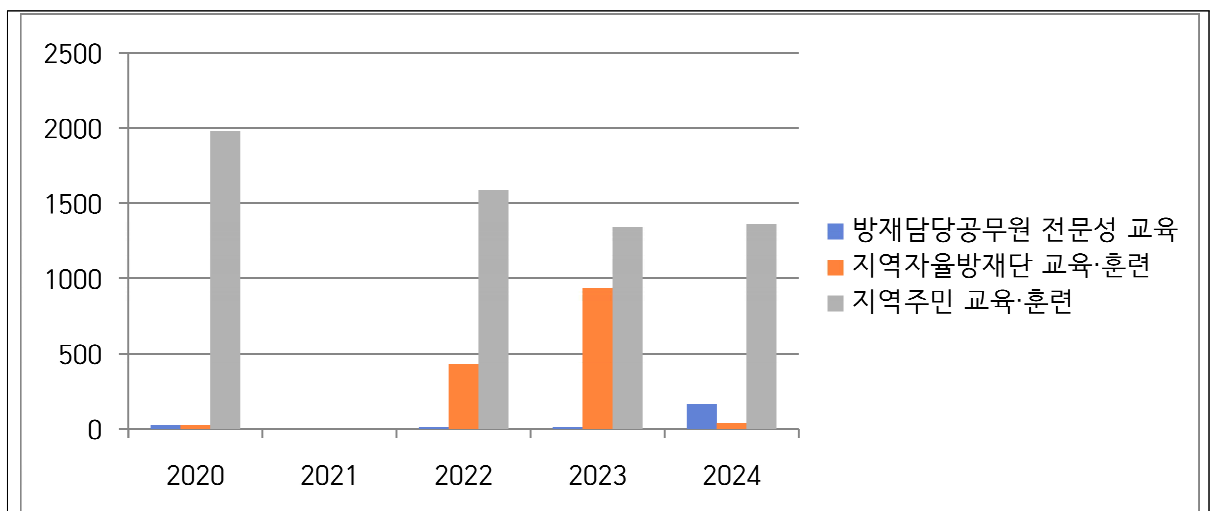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여름철 자연재난 자율방재단 자체교육	3. 17.	자율방재단 사무실	20	여름철 관련 교육	공주시 및 자율방재단	
겨울철 자연재난 자율방재단 자체교육	10. 11.	자율방재단 사무실	20	겨울철 관련 교육	공주시 및 자율방재단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안전교육	24. 1. ~12	안전체험공원	1,359	○ 방문 공주 어린이 및 성인 대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제공	(사)세종충남어머니 안전지도자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22	-	13	12	16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21	-	431	934	40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981	-	1,584	1,343	1,359



☞ 구체적 내용설명(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 재난안전종사자 신규 직원 발생에 따른 교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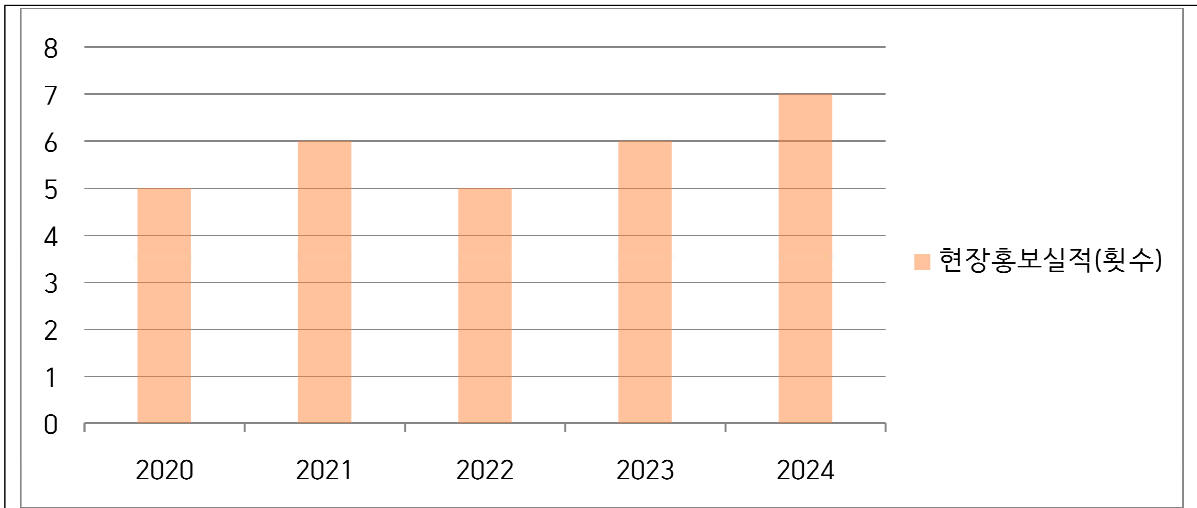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군밤축제 안전문화캠페인	- 겨울철 추위 예방과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재확인 등 안내	1. 26.	신관 공원	20	
2	설맞이 합동 안전문화캠페인	- 시장 내 전기 화재사고 취약 지역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 고무장갑 및 지능형 자동 소화패치 배부	2. 7.	산성 시장	100	
3	개학기 맞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3. 27.	신월초	40	
4	추석 명절맞이 안전문화캠페인	- 전통시장 내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전기안전점검을 통한 화재 등의 사고 예방	9. 6.	산성 시장	80	
5	지역축제 안전문화캠페인	- 시민안전보험, 집중안전 신고제 리플릿 안내 - 백제문화제 맞이 축제장 내 안전문화 홍보 - 가을철 날씨 재난·안전위험요 소 산불, 화재, 인파밀집, 점 검 안내	10. 4.	산성 시장	70	
6	수능 청소년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 관내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및 청소년 보호 활동	11. 14.	관내 전지역	100	
7	2024년 연말 사회재난예방 안전문화캠페인	- 안전문화 홍보물품 및 리플 릿 배부 - 겨울철 화재관련 재난·안전위 험요소에 대한 예방과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민 안전의식 제고	11. 29.	산성 시장	70	
8	산불예방 안전문화캠페인	- 봄철 산불피해방지 -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진흥 기여	3. 21.	산성 시장	130명	
9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산사태 대피 모의훈련	4. 22. 4. 25.	정안면	65명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장홍보실적(횟수)	5	6	5	6	7



☞ 구체적 내용설명(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등)

- 특이사항 없음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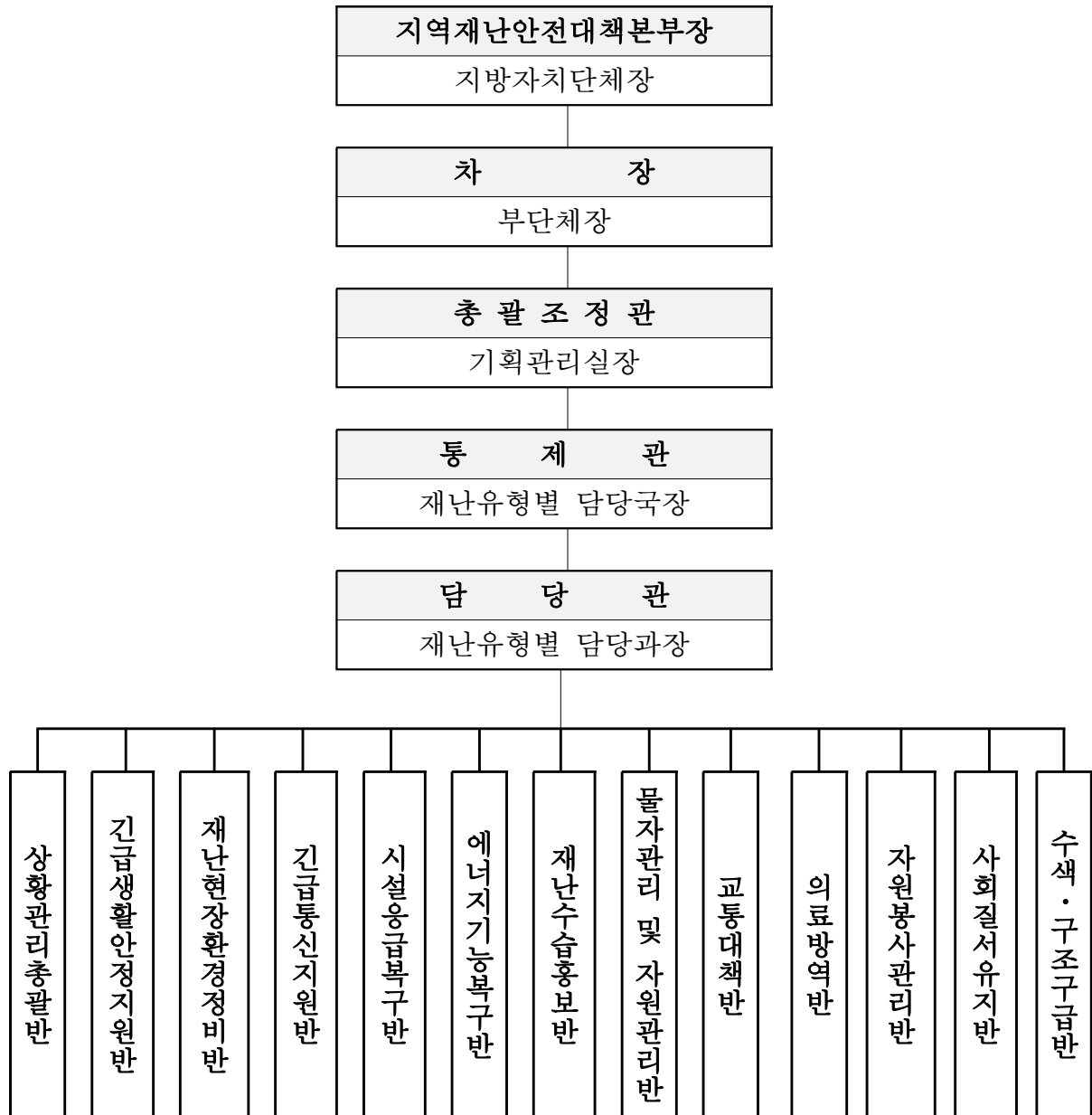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시장 • 위원 : 24인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 위원 : 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시장 • 차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국장 • 통제관 • 담당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시민안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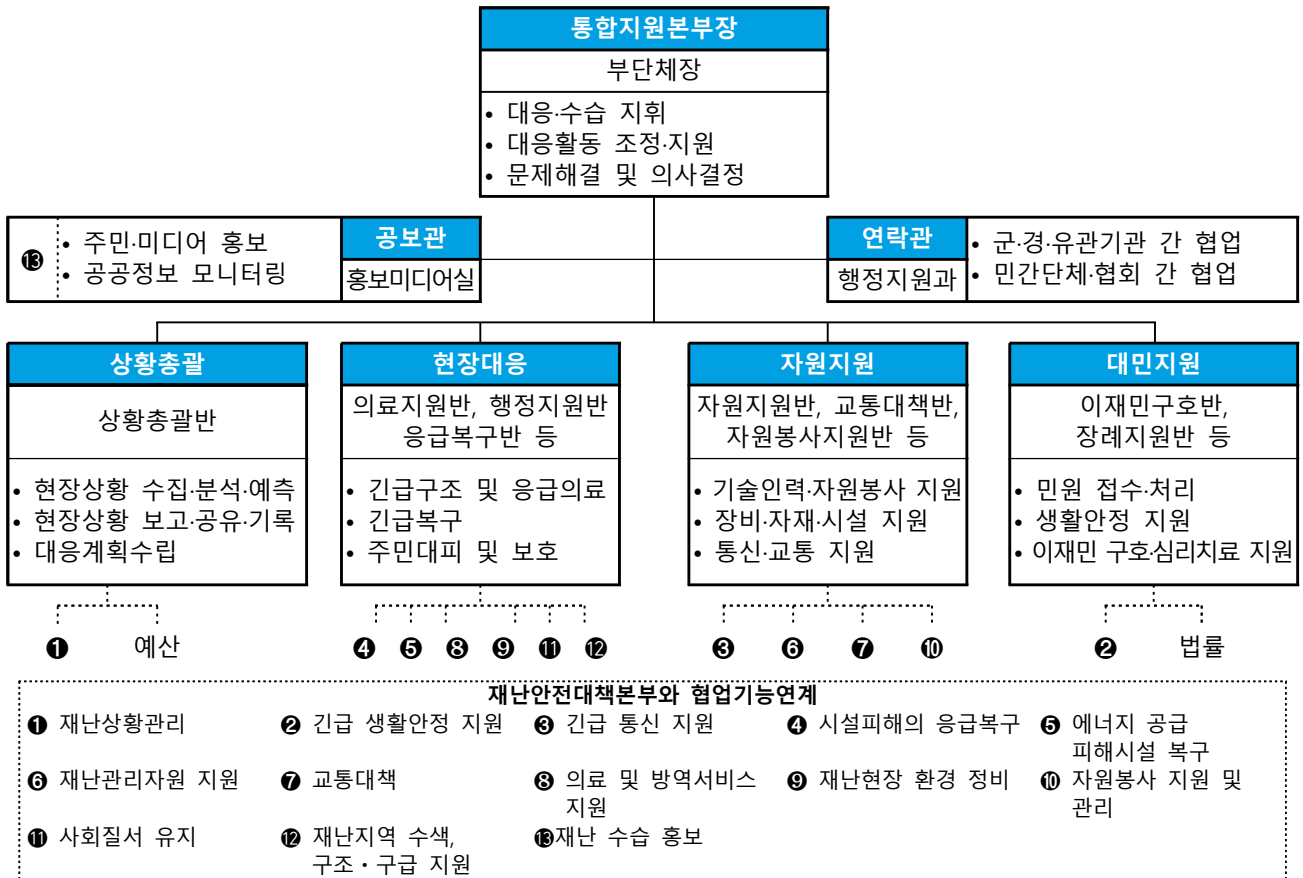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시민안전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홍보미디어실)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및 시설물관리부서)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홍보미디어실)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시민안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정책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행정지원과)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시민안전과)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방 법	비고
공주 소방서	- 화재진압,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 - 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원인, 피해조사 등 기타 자료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공주 경찰서	- 교통 두절·통제 및 해제현황 - 차량 안전지대 대피 및 자동차 운행자제 계도 - 재난지역 경비 및 방법 - 기타 자료 등 요구 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제3585부대 3대대	- 인명구조, 실종자 등 수색 현황 - 주민대피·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질서유지 지원 - 지원 인력·장비 등 응급복구 대민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공주 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피해파악 및 이재민수용시설 지원 - 학교 휴교조치, 학생들의 응급복구 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KT 공주지점	- 사고현장 통신 안전대책 - 통신두절 및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응급복구 등을 위한 통신지원 - 통신관련 대민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전 공주지사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 전기료 감면 및 전기용품 수리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금강홍수 통제소	- 홍수예보 - 홍수조절을 위한 댐 수문 방류 승인 - 수위·강우량 자료 제공	기술지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	- 산간, 계곡, 유원지 등 탐방객의 출입통제 - 등산객, 대피소 인원 등 강제 하산 조치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 고속도로 두절·통제 해소 - 기타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국농어촌 공사 공주지사	-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사전방류 -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사전점검 - 수리시설, 농경지 피해 및 복구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 고속도로 두절·통제 해소 - 교통취약구간 제설장비 확충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충남남부지사	-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점검 - 전기설비 긴급 복구 지원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23.09.01.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8.04.24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4.12.26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3.06.23.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 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9.11.15	
공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1.11.15	
공주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13.11.01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6.11.01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7.04.17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020.11.02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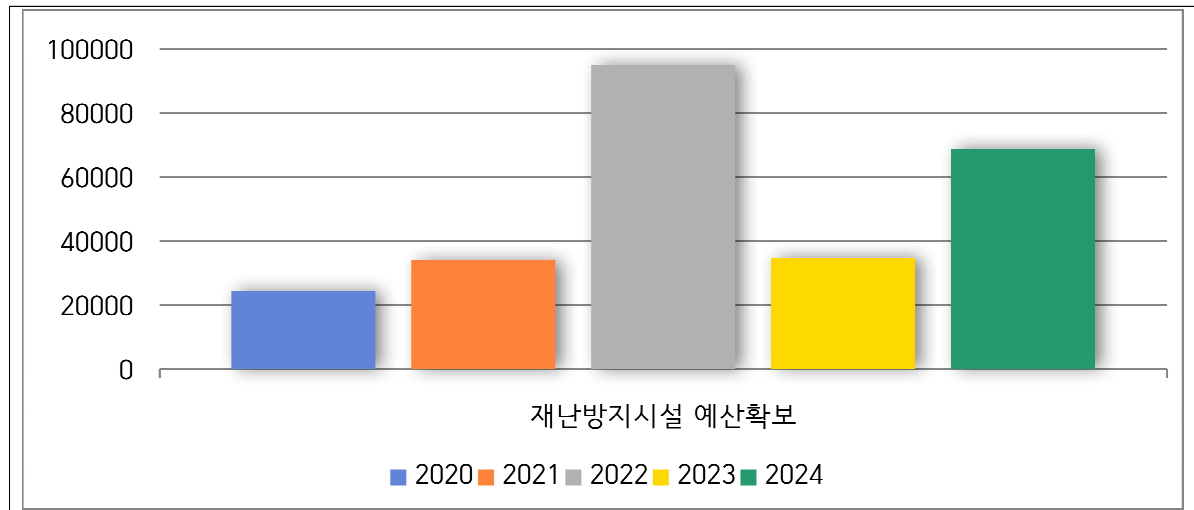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반포면 마암1리 저수지 정비공사	반포면 마암리	저수지정비 1식	2022~2024	1,500	재해예방 편익증진
밀머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계룡면 월가리	저수지정비 1식	2023~2024	1,000	저수지 재해예방
탄천면 웃삼각 저수지 보수사업	탄천면 삼각리	저수지정비 1식	2024	130	재해예방 편익증진
막골저수지 재해복구 및 정비공사	오곡동	저수지정비 1식	2024	397	재해예방 편익증진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시설 설치사업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시설 설치 1식	2023~2024	136	재해예방 편익증진
이인면 만수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이인면 만수리	간이양수장 설치 1식	2023~2024	110	재해예방 편익증진
신풍면 영정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신풍면 영정리	간이양수장 설치 1식	2024~2025	476	재해예방 편익증진
이인면 원골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이인면 이인리	간이양수장 설치 1식	2024~2025	230	재해예방 편익증진
만수지구 침수피해 기능복구사업	이인면 만수리	배수펌프장 설치	2024~2025	6,950	재해예방 편익증진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탄천면 대학리 견동리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2024~2025	20,621	재해예방 편익증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노후위험교량 (삼배실교) 보수보강공사	이인면 운암리 252-6	교면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	2024. 01. 09. ~ 2024. 03. 11.	159	재난방지
노후위험교량 (명곡1교) 철거공사	유구읍 신달리 539-48	교량철거	2023. 11. 13. ~ 2024. 05. 08.	592	재난방지
노후위험교량 (백제큰다리,금성교) 교면 재포장공사	신관동 495-129 금성동 102-1	교면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	2023. 11. 16. ~ 2024. 05. 28.	1,670	재난방지
노후위험교량 (검상교,효 자교) 교면 재포장공사	검상동 682-1 봉정동 612	교면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	2023. 11. 16. ~ 2024. 06. 08.	1,157	재난방지
노후위험교량 (신공주대 교) 보수보강공사	소학동 136-12	교면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	2024. 08. 05. ~ 2024. 12. 19.	1,730	재난방지
사방시설 점검용역	관내 사방시설	외관점검 13, 정밀점검 1개소	2024	5.2	사방시설 점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4,209	33,864	95,043	34,458	68,706



☞ 구체적인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특이사항 없음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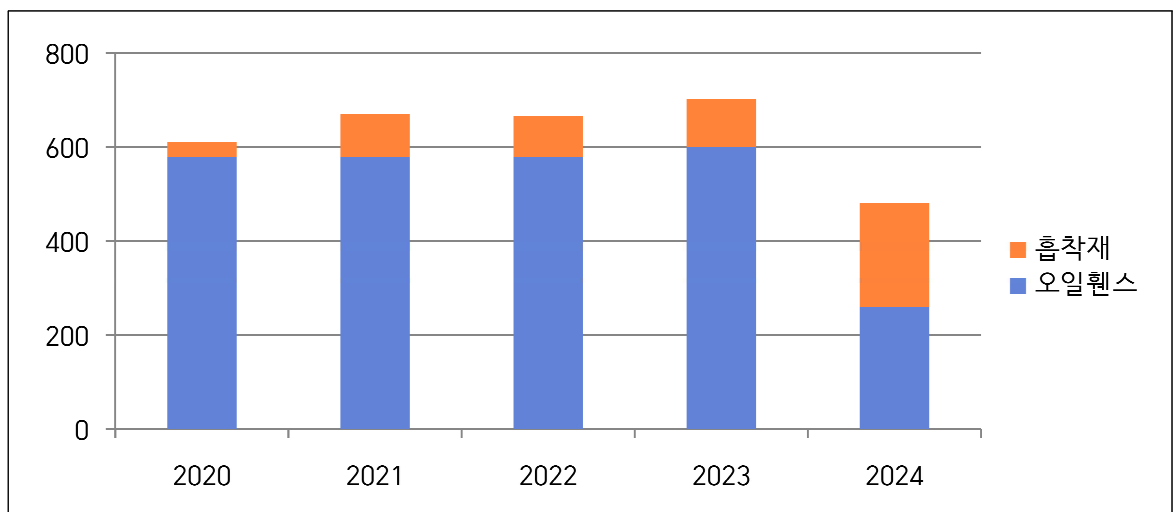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웬스	흡착포	흡착물	흡착분	유처리제	유흡착재
		m	box	box	box	통	box
총계	480	260	100	84	9	17	1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오일웬스	580	580	580	600	260
흡착재(합계)	30	91	86	103	220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하천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보유 방재물자 소모 및 폐기
- 충남도청의 방재물자 지원 등으로 보유량 변동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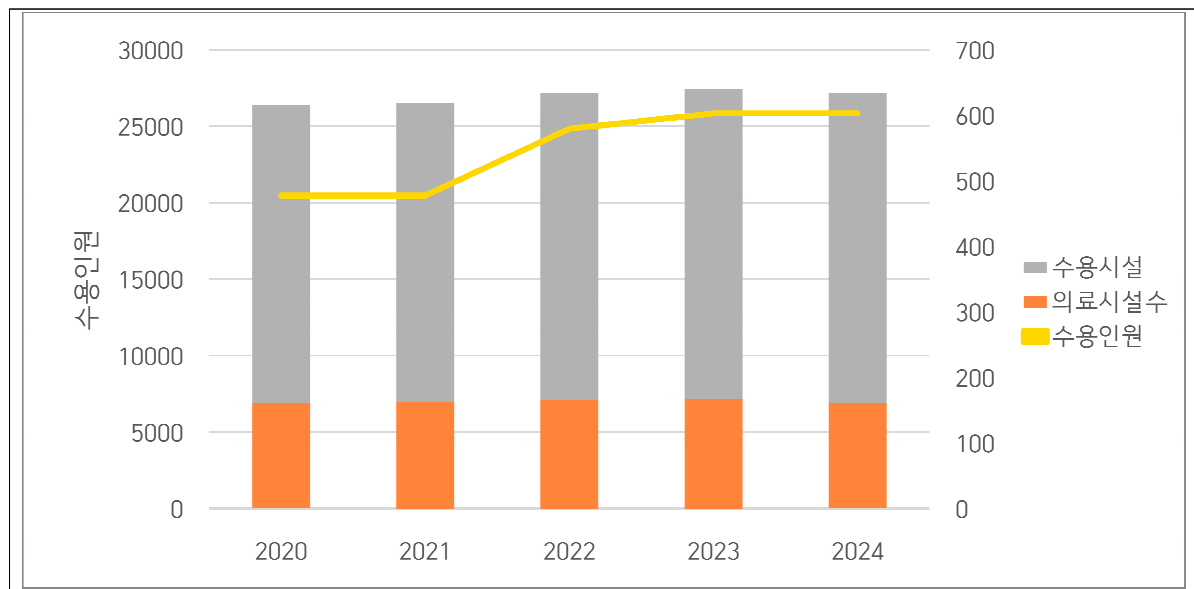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160	268	595	27	3,530	1
병원	140	249	518	12	3,530	1
보건소	1	19	58	2	0	0
기타	19	-	19	13(소방)	-	-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473	25,844	29	11,617	6	274	434	12,733	2	1,220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료시설수		160	162	165	167	160
수용시설	개소	456	456	469	473	473
	수용인원	20,474	20,474	24,840	25,844	25,844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특이사항 없음

나. 장비 지정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덤프
총계	6	1	2	3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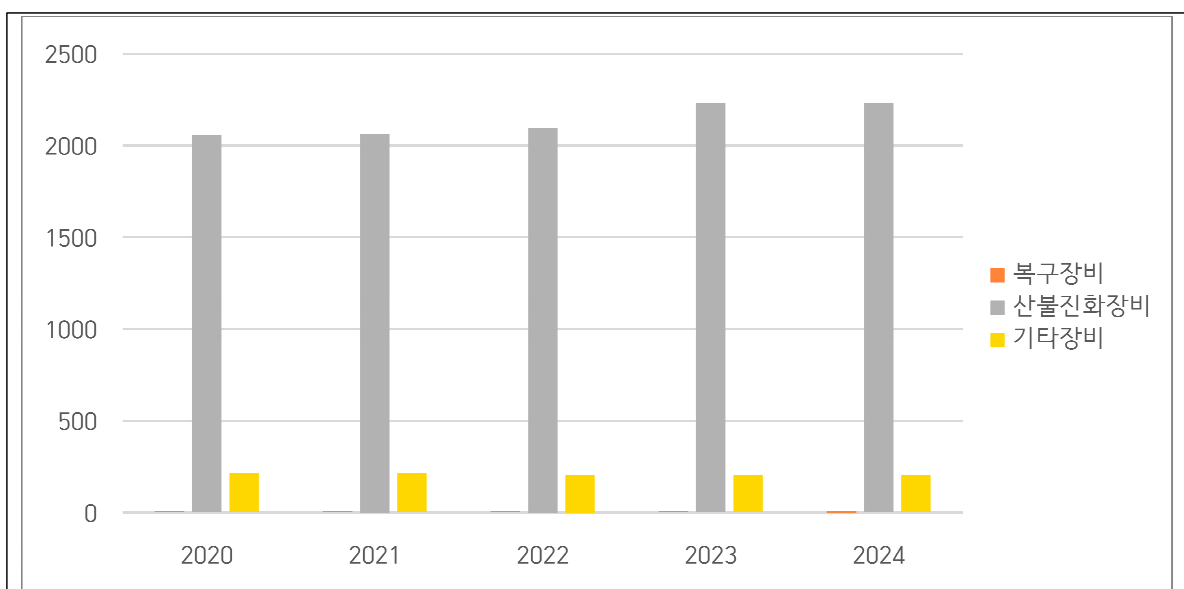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임차 (충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갈퀴	무전기 단말기	등짐 펌프	기타
총계	2,228	5	18	3	912	210	559	521

[기타장비]

구분	계	양수기	기타
총계	205	205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복구장비	8	8	8	8	6
산불진화장비	2,053	2,063	2,096	2,228	2,228
기타장비	212	212	204	205	205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내구연한 등에 따른 소모성 장비의 소진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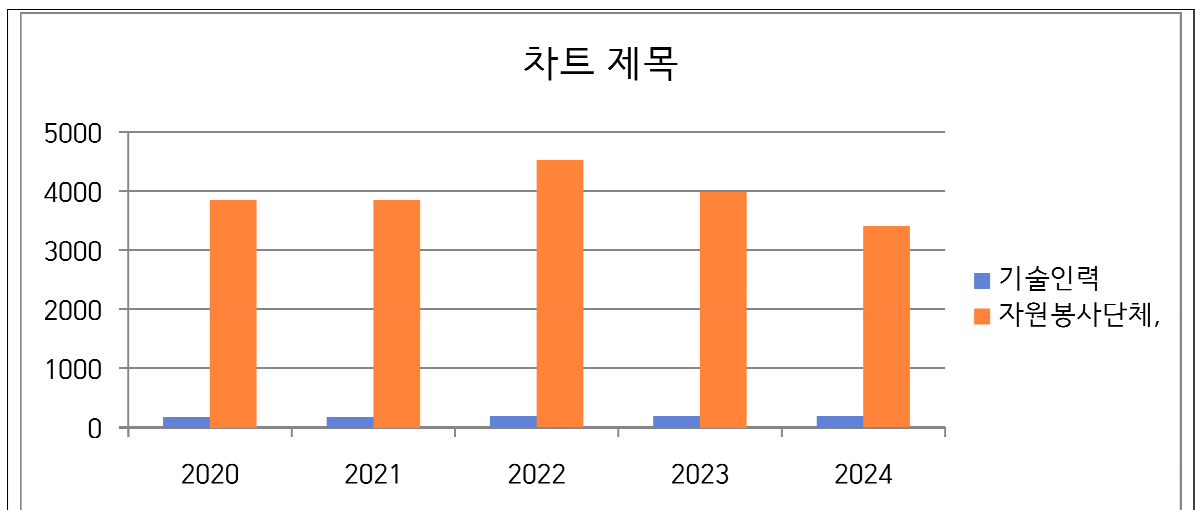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계
인원	198	78	45	24	17	-	6	5	2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인명 구조대	자율 방재단	자율 방범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 회	여성 단체 협의회
인원	3,409	490	57	55	396	474	397	278	78	32	1,15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술인력	179	181	194	194	198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3,846	3,846	4,524	3,985	3,409



☞ 구체적인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특이사항 없음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관리평가	2024 7. 10.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보통	
겨울철 사전대비	2024. 10. 22.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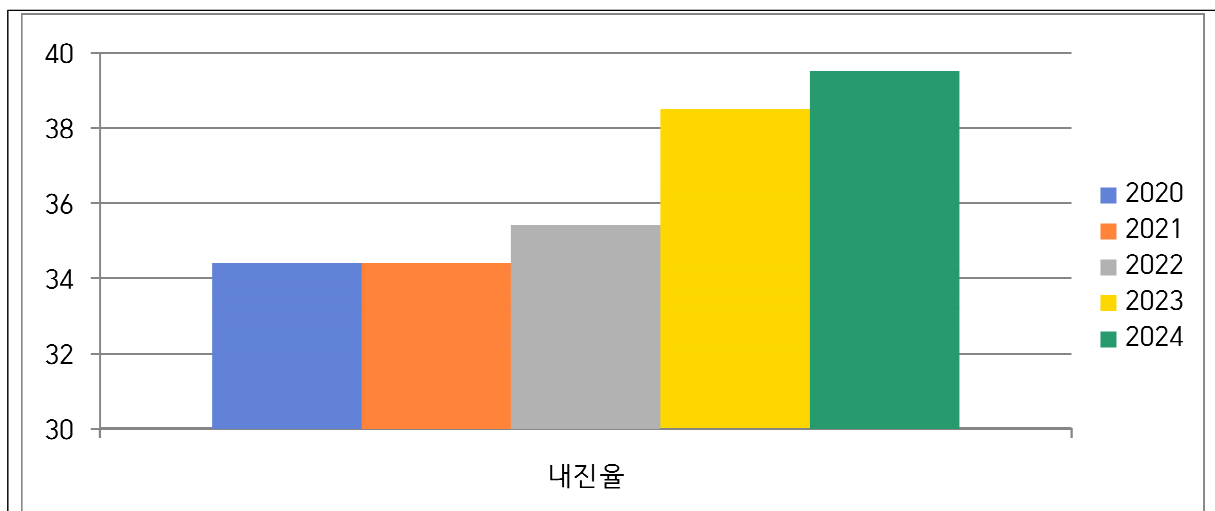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최우수, 우수, 장려)·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4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156	48	4	80.7	39.5
공공건축물	47	15	4	80.7	53.5
도로시설물	89	23	-	-	29.2
수도시설	14	6	-	-	50.0
공공하수처리시설	6	4	-	-	66.7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내진율	34.4	34.4	35.4	38.5	39.5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 원인 등)

- 지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예산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진행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집행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905백만원	905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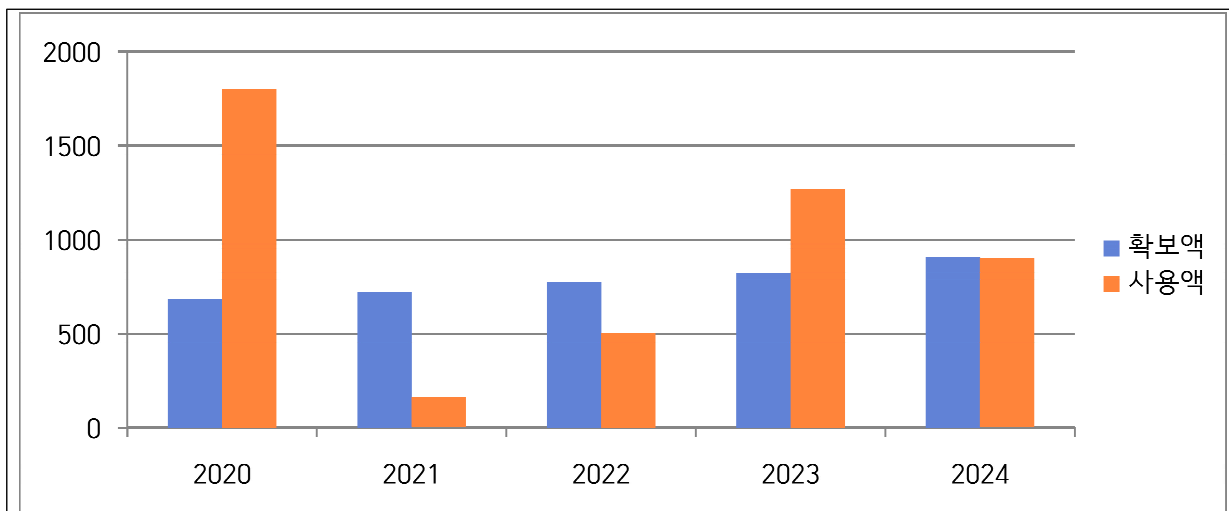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3,906 백만원	3,906 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확보액 (당해연도)		686	718	773	824	905
사 용 액	합 계	1,798	163	500	1,271	901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2	11	114	120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731	161	489	1,157	781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67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	-	-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23년 대비 호우로 인한 피해액 감소 (기금 사용액 감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 수 해	시민안전과	2015	풍수해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지 진	시민안전과	2014	지진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대형화산폭발	시민안전과	2014	화산폭발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시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 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 절차를 규정
가 물	시민안전과	2015	가뭄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조류대발생 (녹조)	환경보호과	2019	조류대발생(녹조)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산 사 태	산림공원과	2015	산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낙뢰	시민안전과	2019	낙뢰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대응 절차 및 행동 조치사항 규정
한파	시민안전과	2019	한파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대응 절차 및 행동조치사항을 규정
폭염	시민안전과	2019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무·역할·조치사항을 규정
산불	산림공원과	2014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불 상황 단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임무·역할·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보호과	2014	화학 유해물질 유출 사고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유출 사고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조치 사항 등을 규정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보호과	2014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댐 붕괴	시민안전과	2014	대규모 홍수 및 지진발생 등으로 대형댐이 붕괴 되었을 때 관련기관의 임무·역할·조치사항 등을 규정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과	2015	고속철도에서의 대형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시민안전과	2015	건축물에서의 화재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경제과	2014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수록
다중밀집시설 붕괴 대형사고	허가건축과	2015	건축물에서의 붕괴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을 규정
가축질병	축산과	2015	가축 질병 위기상황 발생 시 공주시가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감염병	건강관리과	2015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정보통신	홍보미디어실	2018	유·무선 통신 및 방송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부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전 력	경제과	2018	수요급증·설비고장·사회갈등 문제 등에 의해 전력수급 불안으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산하·유관기관의 대응절차를 규정

보건의료	보건정책과	2015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하여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
식 용 수	상하수도과	2014	수질오염,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사회적 강등 등으로 인한 식·용수 공급시스템의 파괴 및 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육상화물 운송	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운송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초미세먼지	환경보호과	2020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한 경우 적용할 세부대응 절차 및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
도로터널 사고	도로과	2018	교량·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항공기 사고	교통과	2018	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
천연가스	경제과	2019	천연가스의 공급차질로 국민 생활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경우 공주시 산하·유관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
저수지붕괴	건설과	2015	저수지붕괴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산 불	2025. 1. 2.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폭 염	2024. 1. 26.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한 파	2024. 3. 14.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초 미 세 먼 지	2024. 2. 21.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가 스	2024. 2. 6.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대 형 화 산 폭 발	2024. 2. 15.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지 진	2025. 2. 5.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풍 수 해	2024. 4. 1.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조류대발생(녹조)	2024. 1. 22.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저 수 지 붕 괴	2024. 7. 22.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항 공 기 사 고	2023. 10. 19.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도 로 터 널	2023. 7. 2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육 상 화 물 운 송 사 고	2024. 2. 6.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식 용 수 사 고	2024. 11. 2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보 건 의 료 사 고	2024. 11. 28.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전 력 사 고	2024. 1. 1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정 보 통 신 사 고	2025. 1. 2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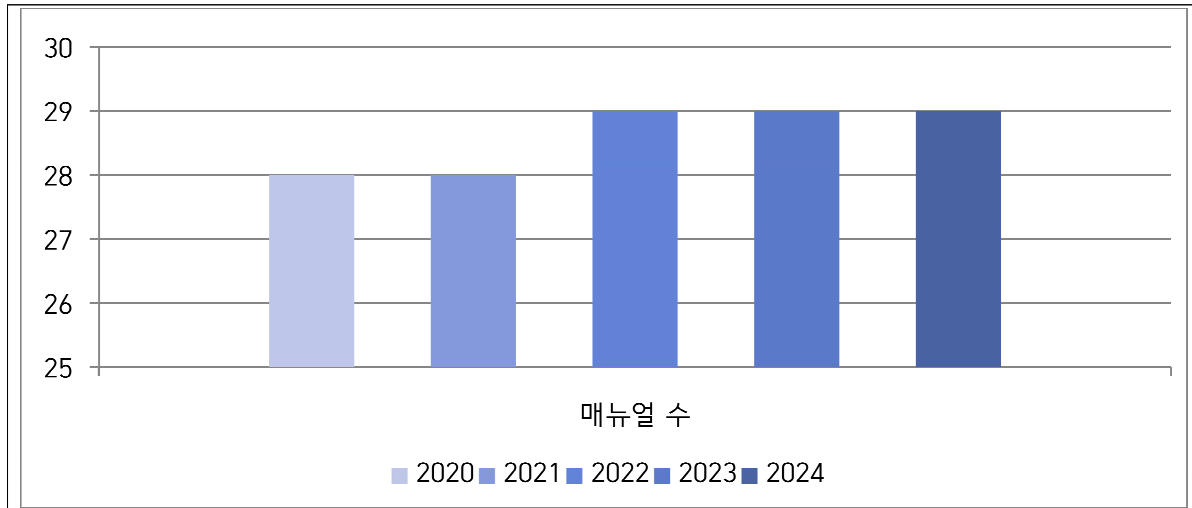
감염병 재난	2025. 2. 1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가축질병	2025. 1. 17.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2025. 1. 22.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24. 11. 26.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고속철도 고형철사도	2024. 2. 5.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댐 붕괴	2024. 11. 26.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대규모 수질오염	2024. 7. 19.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가뭄	2024. 11. 19.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화학사고	2024. 1. 22.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낙뢰	2024. 3. 1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산사태	2025. 1. 2.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2024. 1. 23.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풍수해	2024. 5. 28.	안전한국훈련	- 유관기관·단체간 구축된 협업체계를 활용한 통합 재난대응의 정 추진착 - 최첨단 ICT 기술(드론 등) 재난대응 현장훈련에 활용 - 재난취약계층 및 국민 참여단의 안전한국훈련 적극참여로 대처능력 제고 및 안전의 중요성 몸소 체험	
유해화학물질	2024. 9. 25.	안전충남훈련	- 단계별 행동요령 및 임무 점검을 통한 13개 협업 부서별 임무·역할 숙지	
지진	2024. 12. 3.	지진 대비 훈련	-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대응절차 숙지 및 조치 계획 수립 미흡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매뉴얼 수	28	28	29	29	29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종합등급
진단결과	C	D	C	C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 급	A	미실시	C	C	C

☞ 구체적 내용설명

-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대비 예방대책추진 등급이 C에서 D로 하향되었으며, 나머지 등급은 동일함.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공주시 안전총괄과(담당자 : 김현태, 전화 : 041)840-229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3. 17.

공 주 시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석남리 일원
- 다. 사업규모 : 유구천 축제 L=2.176km, 저호 L=0.567km, 교량2개소
고현천 보축 L=1.213km, 교량 2개소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우수관로 정비 L=1.993km
- 라. 사업기간 : 노선지정 공고일로부터 5년간
- 마. 시행자 : 공주시장

2. 보상계획

-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1)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 2) 열람(공고)기간 : 2025.03.17. ~ 2025.04.01.(공고일로부터 15일)
 - 3) 열람장소 : 공주시청 안전총괄과(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2
 - 4) 이의신청 : 토지, 물건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1)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거 보상시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3)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 협의 시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 (수령불가시) 보상금 공탁

4) 보상금 지급 : 협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되면 보상금 전액을 예금계좌로 입금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업체 : 감정평가법인

○ 추천일 : 2025.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택/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보상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별도 통지 없이 공고로써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안전총괄과(☎041-840-2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	유구읍 신영리	485-2	도	179	10	이0용	유구리	-	-	-
2	유구읍 신영리	485-3	도	10	10	이0용	유구리	-	-	-
3	유구읍 신영리	485-4	도	17	17	이0용	유구리	-	-	-
4	유구읍 신영리	484-3	도	33	33	이0옥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	-	-
5	유구읍 신영리	484-2	도	30	30	이0옥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	-	-
6	유구읍 신영리	484-1	도	46	4	이0옥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	-	-
7	유구읍 신영리	885	도	1,709	866	국(건설부)		-	-	-
8	유구읍 신영리	483-3	도	112	112	이0룡	석남리	-	-	-
9	유구읍 신영리	483-2	도	205	140	이0룡	석남리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0	유구읍 신영리	482-3	도	69	56	이0룡	석남리	-	-	-
11	유구읍 신영리	482-2	도	1,045	15	이0룡	석남리	-	-	-
12	유구읍 신영리	480-2	도	671	200	이0용	유구리	-	-	-
13	유구읍 신영리	884	구	241	26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14	유구읍 신영리	486	천	698	365	이0용		-	-	-
15	유구읍 신영리	487	천	3,673	1,703	정0성	0 힐락우드 하노버 뉴햄프셔주 03755 미국	-	-	-
16	유구읍 신영리	861-82	천	115,961	16,956	국(국토교통부)		-	-	-
17	유구읍 신영리	861-41	천	6,288	384	국(국토교통부)		-	-	-
18	유구읍 신영리	488	천	463	463	이0옥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	-	-
19	유구읍 신영리	489	천	1,240	1,240	이0룡	석남리	-	-	-
20	유구읍 유구리	648-2	천	3,240	1,424	국(국토교통부)		-	-	-
21	유구읍 유구리	9999-3	천		3,613	무0번		-	-	-
22	유구읍 유구리	628-1	전	4,226	452	최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5길 13 라동 518호(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	-	-
23	유구읍 유구리	648-15	천	11,449	7,575	국(국토교통부)		-	-	-
24	유구읍 유구리	648-16	천	1,002	461	국(국토교통부)		-	-	-
25	유구읍 유구리	648-21	천	112	9	국(국토교통부)		-	-	-
26	유구읍 유구리	648-25	천	121	3	국(국토교통부)		-	-	-
27	유구읍 유구리	586	대	32	9	전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솟절길 37-11	-	-	-
28	유구읍 유구리	586-1	대	70	17	공주시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9	유구읍 유구리	648	천	110,880	44,061	국(국토교통부)		-	-	-
30	유구읍 유구리	610-5	제	683	658	국(국토교통부)		-	-	-
31	유구읍 유구리	610-3	대	1,243	398	충청남도		-	-	-
32	유구읍 유구리	610-6	천	1,778	1,778	국(국토교통부)		-	-	-
33	유구읍 유구리	610-2	도	559	443	유구리		-	-	-
34	유구읍 유구리	610-4	도	1,183	1,002	유구리		-	-	-
35	유구읍 유구리	610-1	임	109	109	유구리		-	-	-
36	유구읍 유구리	611-2	천	73	73	국(국토교통부)		-	-	-
37	유구읍 유구리	599-1	전	63	31	박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42-1	-	-	-
38	유구읍 유구리	592-2	도	59	11	이00	426-17	-	-	-
39	유구읍 유구리	592-1	대	327	4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36	-	-	-
40	유구읍 유구리	590-2	제	539	138	국(국토교통부)		-	-	-
41	유구읍 유구리	590-3	천	106	106	국(국토교통부)		-	-	-
42	유구읍 유구리	591	천	952	952	국(국토교통부)		-	-	-
43	유구읍 유구리	589-3	제	704	63	국(국토교통부)		-	-	-
44	유구읍 유구리	589-4	천	188	188	국(국토교통부)		-	-	-
45	유구읍 유구리	648-17	천	559	559	국(국토교통부)		-	-	-
46	유구읍 유구리	648-57	천	201	201	국(국토교통부)		-	-	-
47	유구읍 유구리	584-5	답	37	37	공주시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48	유구읍 유구리	585-2	도	50	50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49	유구읍 유구리	650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	-	-
50	유구읍 유구리	650-1	도	168	83	국(국토교통부)		-	-	-
51	유구읍 유구리	584-1	답	1,089	1,042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52	유구읍 유구리	584-4	전	438	438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53	유구읍 유구리	584-3	전	256	256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54	유구읍 유구리	584-6	답	1,196	1,196	공주시		-	-	-
55	유구읍 유구리	584-7	답	155	155	공주시		-	-	-
56	유구읍 유구리	584	답	785	785	김00	경기도 안성시 아양1길 43 201호 (석정동)	-	-	-
57	유구읍 유구리	650-2	답	68	31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58	유구읍 유구리	650-3	도	170	170	국(국토교통부)		-	-	-
59	유구읍 유구리	650-4	전	400	400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60	유구읍 유구리	429-60	대	48	48	공주시		-	-	-
61	유구읍 유구리	429-58	대	71	71	공주시		-	-	-
62	유구읍 유구리	429-29	대	170	170	공주시		-	-	-
63	유구읍 유구리	429-15	도	823	56	국(국토교통부)		-	-	-
64	유구읍 유구리	산93-9	도	406	138	국(국토교통부)		-	-	-
65	유구읍 유구리	645	도	9,520	2,163	국(국토교통부)		-	-	-
66	유구읍 유구리	648-78	대	13	13	공주시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67	유구읍 유구리	648-14	대	2,315	5			-	-	-
68	유구읍 유구리	648-13	대	122	122	유구2리마을회	426	-	-	-
69	유구읍 유구리	648-1	대	116	116	유구2리마을회	426	-	-	-
70	유구읍 유구리	648-76	대	7	7	공주시		-	-	-
71	유구읍 유구리	583-1	답	878	878	공주시		-	-	-
72	유구읍 유구리	583	답	401	401	공주시		-	-	-
73	유구읍 유구리	650-5	도	1,389	322	국(국토교통부)		-	-	-
74	유구읍 유구리	582	답	2,066	2,038	문00	반죽동168-5	-	-	-
75	유구읍 유구리	581-4	천	131	131	전0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133	-	-	-
76	유구읍 유구리	576-2	답	2,218	2,106	이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36 308동 1303호 (소담동 새샘마을3단지)	-	-	-
77	유구읍 유구리	580	천	3,174	3,174	공주시		-	-	-
78	유구읍 유구리	581-1	천	4,262	4,262	공주시		-	-	-
79	유구읍 유구리	576-7	답	40	40	공주시		-	-	-
80	유구읍 유구리	581-3	천	202	202	전00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269 수락파크빌 503-1003	-	-	-
81	유구읍 유구리	576-4	답	1,471	1,338	김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90 (성내동)	-	-	-
82	유구읍 유구리	576-5	답	841	683	신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45-15	-	-	-
83	유구읍 유구리	576-3	천	317	317	신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45-15	-	-	-
84	유구읍 유구리	576-12	답	41	41	신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45-15	-	-	-
85	유구읍 유구리	576-11	대	434	383	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14-4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86	유구읍 유구리	437-2	도	390	60	국(기획재정부)		-	-	-
87	유구읍 유구리	437-6	제	198	198	공주시		-	-	-
88	유구읍 유구리	437-7	제	187	187	박0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0-4 진아빌라 비-101	-	-	-
89	유구읍 유구리	437-3	전	253	253	공주시		-	-	-
90	유구읍 유구리	438-10	제	21	21	박0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0-4 진아빌라 비-101	-	-	-
91	유구읍 유구리	438-9	제	117	117	공주시		-	-	-
92	유구읍 유구리	438-2	도	1,136	494	국(기획재정부)		-	-	-
93	유구읍 유구리	438-3	임	2,108	2,108	조00	서울성북구돈암동45-61	-	-	-
94	유구읍 유구리	576-6	대	741	539	김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 310동 1104호 (송강동 청솔아파트)	-	-	-
95	유구읍 유구리	576-1	천	4,648	4,648	공주시		-	-	-
96	유구읍 유구리	576-8	답	582	582	공주시		-	-	-
97	유구읍 유구리	576-13	답	146	146	김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안길 31-4	-	-	-
98	유구읍 유구리	576-9	대	454	308	김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안길 31-4	-	-	-
99	유구읍 유구리	575-2	천	975	975	공주시		-	-	-
100	유구읍 유구리	572	천	405	49	정00	2 월락우드 하노버 뉴햄프셔주 03755 미국	-	-	-
101	유구읍 유구리	574	천	595	488	황00	신풍면 백교리	-	-	-
102	유구읍 유구리	653	구	99	28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103	유구읍 유구리	607-2	대	291	2	박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6	-	-	-
104	유구읍 유구리	609-2	대	116	3	인00	대전유성구관평동672 테크노벨리단지아파트612-1702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05	유구읍 유구리	614-1	대	89	22	공주시		-	-	-
106	유구읍 유구리	614	대	574	3	이00	614	-	-	-
107	유구읍 유구리	611-1	도	89	89	국(국토교통부)		-	-	-
108	유구읍 유구리	612	도	145	145	국(국토교통부)		-	-	-
109	유구읍 유구리	648-3	도	192	107	국(국토교통부)		-	-	-
110	유구읍 유구리	613	도	145	145	이00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57	-	-	-
111	유구읍 유구리	628-3	도	251	22	국(국토교통부)		-	-	-
112	유구읍 유구리	620-3	도	40	26	이00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57	-	-	-
113	유구읍 유구리	621-2	도	20	5	국(국토교통부)		-	-	-
114	유구읍 유구리	402-2	도	179	118	한00		-	-	-
115	유구읍 유구리	402-1	천	258	258	한00		-	-	-
116	유구읍 유구리	648-12	전	222	222	김00	589	-	-	-
117	유구읍 유구리	648-77	전	54	54	공주시		-	-	-
118	유구읍 유구리	433-1	대	187	29	이00	428	-	-	-
119	유구읍 유구리	433	대	721	111	장00	연총리 161	-	-	-
120	유구읍 유구리	산91-1	도	799	215	국(국토교통부)		-	-	-
121	유구읍 유구리	403-1	답	715	208	김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75	-	-	-
122	유구읍 유구리	628-14	도	187	20	국(국토교통부)		-	-	-
123	유구읍 유구리	403-3	도	985	769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24	유구읍 유구리	403-2	도	400	339	한00				
125	유구읍 유구리	산90-1	도	202	17	국(국토교통부)		-	-	-
126	유구읍 유구리	산93-4	도	26	11	윤00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05동 603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	-	-
127	유구읍 유구리	산93-5	도	27	19	윤00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05동 603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	-	-
128	유구읍 석남리	426-1	도	3,517	2,730	국(국토교통부)		-	-	-
129	유구읍 석남리	23-4	대	660	128	양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한내울길 59	-	-	-
130	유구읍 석남리	23-9	답	980	269	양00	450	-	-	-
131	유구읍 석남리	23-8	답	826	212	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1길 59	-	-	-
132	유구읍 석남리	23-6	답	810	179	조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길 34 605호(동진비둘기아파트)	-	-	-
133	유구읍 석남리	23-7	답	605	142	황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2길 10	-	-	-
134	유구읍 석남리	20	답	5,310	982	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막1길 36-5	-	-	-
135	유구읍 석남리	22-3	제	375	375	국(국토교통부)		-	-	-
136	유구읍 석남리	21-3	제	1	1	이00	석남리 258	-	-	-
137	유구읍 석남리	429-1	제	420	420	국(국토교통부)		-	-	-
138	유구읍 석남리	424-1	구	9,841	676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139	유구읍 석남리	426-2	답	165	3	국(기획재정부)		-	-	-
140	유구읍 석남리	27-2	전	935	102	김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8 망포마을엘지동수원자이 304-1604	-	-	-
141	유구읍 석남리	27-3	제	24	24	국(국토교통부)		-	-	-
142	유구읍 석남리	425	도	1,881	535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43	유구읍 석남리	429-2	천	179	121	국(국토교통부)		-	-	-
144	유구읍 석남리	429-3	제	1,927	1,927	국(국토교통부)		-	-	-
145	유구읍 석남리	28-5	제	217	217	국(국토교통부)		-	-	-
146	유구읍 석남리	28-8	대	830	12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수춘자개미길 73	-	-	-
147	유구읍 석남리	28-1	대	575	40	김0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62	-	-	-
148	유구읍 석남리	28-7	답	625	6	김00	경기도 평택시 용죽1로 33 1104동 1703호(용이동 평택비전지웰푸르지오)	-	-	-
149	유구읍 석남리	28-4	천	211	127	송00	57	-	-	-
150	유구읍 석남리	28-6	제	348	348	국(국토교통부)		-	-	-
151	유구읍 석남리	28-3	답	1,937	63	송00	57	-	-	-
152	유구읍 석남리	29-1	천	552	109	변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한내울길 16-6	-	-	-
153	유구읍 석남리	29-4	제	738	738	국(국토교통부)		-	-	-
154	유구읍 석남리	29-3	제	341	341	국(국토교통부)		-	-	-
155	유구읍 석남리	29-2	천	543	543	국(국토교통부)		-	-	-
156	유구읍 석남리	29-5	제	15	15	국(국토교통부)		-	-	-
157	유구읍 석남리	30	천	549	549	국(국토교통부)		-	-	-
158	유구읍 석남리	226-57	대	143	143	공주시		-	-	-
159	유구읍 석남리	433	도	9,567	479	국(국토교통부)		-	-	-
160	유구읍 석남리	41-5	답	3,415	125	안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93	-	-	-
161	유구읍 석남리	43-4	제	4	4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62	유구읍 석남리	43-3	제	162	162	국(국토교통부)		-	-	-
163	유구읍 석남리	31	천	552	552	국(국토교통부)		-	-	-
164	유구읍 석남리	437	도	149	149	국(국토교통부)		-	-	-
165	유구읍 석남리	32	천	169	169	공주시		-	-	-
166	유구읍 석남리	41-4	답	990	19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제골길 34-19	-	-	-
167	유구읍 석남리	42-6	제	283	283	국(국토교통부)		-	-	-
168	유구읍 석남리	42-5	천	183	183	국(국토교통부)		-	-	-
169	유구읍 석남리	42-7	제	62	62	국(국토교통부)		-	-	-
170	유구읍 석남리	41-1	답	1,302	33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제골길 34-19	-	-	-
171	유구읍 석남리	41-3	제	29	29	국(국토교통부)		-	-	-
172	유구읍 석남리	41-2	제	56	56	국(국토교통부)		-	-	-
173	유구읍 석남리	34-2	답	717	163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제골길 34-19	-	-	-
174	유구읍 석남리	34-6	제	713	713	국(국토교통부)		-	-	-
175	유구읍 석남리	34-7	천	187	187	국(국토교통부)		-	-	-
176	유구읍 석남리	34-8	제	204	204	국(국토교통부)		-	-	-
177	유구읍 석남리	34-4	제	1,112	1,112	국(국토교통부)		-	-	-
178	유구읍 석남리	34-5	천	106	106	국(국토교통부)		-	-	-
179	유구읍 석남리	34-1	천	2,040	2,040	국(국토교통부)		-	-	-
180	유구읍 석남리	33	임	4,988	4,988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81	유구읍 석남리	34-3	제	83	83	국(국토교통부)		-	-	-
182	유구읍 석남리	35-2	답	1,059	38	지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79번길 18(지동)	-	-	-
183	유구읍 석남리	35-9	답	780	91	백00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600-25 304동 1709호 (월송동 공주월송 엘에이치 천년나무 3단지)	-	-	-
184	유구읍 석남리	35-7	답	992	234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80-35 에이동 202호(근화아파트)	-	-	-
185	유구읍 석남리	35-5	제	1,577	1,577	국(국토교통부)		-	-	-
186	유구읍 석남리	35-6	천	1,344	1,344	국(국토교통부)		-	-	-
187	유구읍 석남리	35-4	제	588	588	국(국토교통부)		-	-	-
188	유구읍 석남리	35-3	제	284	284	국(국토교통부)		-	-	-
189	유구읍 석남리	35-1	천	1,772	1,772	국(국토교통부)		-	-	-
190	유구읍 석남리	36	답	1,661	646	차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80-35 에이동 301호 (근화아파트)	-	-	-
191	유구읍 석남리	36-1	제	534	534	국(국토교통부)		-	-	-
192	유구읍 석남리	27-1	답	688	19	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막1길 36-5	-	-	-
193	유구읍 석남리	37-3	답	126	118	공주시		-	-	-
194	유구읍 석남리	434	구	8,436	46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195	유구읍 석남리	217-3	도	1,757	195	공주시		-	-	-
196	유구읍 석남리	223-12	대	9	4	강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수촌중앙길 54-10	-	-	-
197	유구읍 석남리	221-1	답	887	7	황00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주공아파트 206-401	-	-	-
198	유구읍 석남리	429-5	천	214	214	국(기획재정부)		-	-	-
199	유구읍 석남리	429-4	제	2,499	2,499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00	유구읍 석남리	429-7	전	449	449	공주시		-	-	-
201	유구읍 석남리	429-6	체	1,743	1,743	공주시		-	-	-
202	유구읍 석남리	220-3	답	2,117	2,087	주식회사엘케이 에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4길 59(엘케이에스타운)	-	-	-
203	유구읍 석남리	25-7	임	2,301	2	홍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살포쟁이길 6-7	-	-	-
204	유구읍 석남리	429-8	전	105	105	공주시		-	-	-
205	유구읍 석남리	227-1	대	373	373	국(국토교통부)		-	-	-
206	유구읍 석남리	227-6	도	401	401	국(국토교통부)		-	-	-
207	유구읍 석남리	227-7	도	341	341	국(국토교통부)		-	-	-
208	유구읍 석남리	227-5	대	235	235	국(국토교통부)		-	-	-
209	유구읍 석남리	227-8	도	65	65	국(국토교통부)		-	-	-
210	유구읍 석남리	227-9	대	75	75	공주시		-	-	-
211	유구읍 석남리	227-10	대	182	182	공주시		-	-	-
212	유구읍 석남리	439	도	8,799	453	국(국토교통부)		-	-	-
213	유구읍 석남리	227-2	대	7	7	공주시		-	-	-
214	유구읍 석남리	227-3	대	60	60	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82-2 102동 501호(파라다이스 하우스)	-	-	-
215	유구읍 석남리	226-27	대	189	189	국(국토교통부)		-	-	-
216	유구읍 석남리	226-34	도	14	14	공주시		-	-	-
217	유구읍 석남리	427	천	4,215	4,215	국(국토교통부)		-	-	-
218	유구읍 석남리	24-1	답	413	21	공주시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19	유구읍 석남리	441-2	도	149	132	국(국토교통부)		-	-	-
220	유구읍 석남리	228-1	전	434	135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221	유구읍 석남리	441-3	전	379	379	오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8-28	-	-	-
222	유구읍 석남리	231	답	985	229	차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5 204동 203호 (금곡동 엘지빌리시아파트)	-	-	-
223	유구읍 석남리	232	답	2,331	968	박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5 5112동 1203호 (다산동 이편한세상 다산)	-	-	-
224	유구읍 석남리	441-4	도	2,804	186	국(국토교통부)		-	-	-
225	유구읍 석남리	233	천	126	23	이00	유구리	-	-	-
226	유구읍 석남리	316-1	도	1,430	6	충청남도		-	-	-
227	유구읍 석남리	223-16	도	71	71	공주시		-	-	-
228	유구읍 석남리	25-1	천	463	283	안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75 102호 (2차목화아파트)	-	-	-
229	유구읍 석남리	25-3	답	1,220	12	농업회사법인순 아유한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여드니1길 29-7	-	-	-
230	유구읍 석남리	424-3	구	357	357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231	유구읍 석남리	424-2	구	311	5	국(농림축산식품 부)		-	-	-
232	유구읍 석남리	226-1	대	50	50	정00	공주읍 반죽동 19	-	-	-
233	유구읍 석남리	226-30	대	53	53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20	-	-	-
234	유구읍 석남리	226-28	도	128	128	국(국토교통부)		-	-	-
235	유구읍 석남리	226-29	도	452	390	국(국토교통부)		-	-	-
236	유구읍 석남리	226-35	도	7	7	공주시		-	-	-
237	유구읍 석남리	226-36	도	25	25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38	유구읍 석남리	226-37	도	55	51	국(국토교통부)		-	-	-
239	유구읍 석남리	226-58	대	37	37	공주시		-	-	-
240	유구읍 석남리	226-59	대	32	32	공주시		-	-	-
241	유구읍 석남리	226-60	대	32	23	공주시		-	-	-
242	유구읍 석남리	226-16	대	12	6	공주시		-	-	-
243	유구읍 석남리	226-15	대	22	22	장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1 208동 2204호 (신동 래미안영통마크원아파트)	-	-	-
244	유구읍 석남리	226-13	대	12	12	공주시		-	-	-
245	유구읍 석남리	226-14	대	88	49	공주시		-	-	-
246	유구읍 석남리	428	천	2,625	2,625	국(국토교통부)		-	-	-
247	유구읍 석남리	24-7	천	13	12	이00	아산군 온양읍 풍기리 229	-	-	-
248	유구읍 석남리	24-2	답	2,390	42	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59-43	-	-	-
249	유구읍 석남리	24-8	천	268	126	최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59-43	-	-	-
250	유구읍 석남리	429	천	46,074	46,074	국(국토교통부)		-	-	-
251	유구읍 석남리	26	임	1,745	1,745	이00	석남리 258	-	-	-
252	유구읍 석남리	226-3	대	417	417	국(국토교통부)		-	-	-
253	유구읍 석남리	226-40	도	201	151	국(국토교통부)		-	-	-
254	유구읍 석남리	226-39	도	67	48	국(국토교통부)		-	-	-
255	유구읍 석남리	226-38	도	57	27	국(국토교통부)		-	-	-
256	유구읍 석남리	226-63	대	72	2	공주시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57	유구읍 석남리	226-45	대	8	8	공주시		-	-	-
258	유구읍 석남리	226-46	대	15	15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29-8	-	-	-
259	유구읍 석남리	226-31	도	631	631	국(국토교통부)		-	-	-
260	유구읍 석남리	226-47	대	376	376	국(국토교통부)		-	-	-
261	유구읍 석남리	226-50	대	12	12	국(국토교통부)		-	-	-
262	유구읍 석남리	226-48	대	9	9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29-8	-	-	-
263	유구읍 석남리	226-9	대	138	138	이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장터길 29-8	-	-	-
264	유구읍 석남리	240-3	대	236	1	조00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17	-	-	-
265	유구읍 석남리	241-3	대	68	12	국(국토교통부)		-	-	-
266	유구읍 석남리	226-4	대	1	1	공주시		-	-	-
267	유구읍 석남리	226-22	대	218	218	국(국토교통부)		-	-	-
268	유구읍 석남리	226-32	도	101	101	오00	석남리226-5	-	-	-
269	유구읍 석남리	226-41	도	74	74	국(국토교통부)		-	-	-
270	유구읍 석남리	226-42	도	172	172	국(국토교통부)		-	-	-
271	유구읍 석남리	226-49	도	59	59	공주시		-	-	-
272	유구읍 석남리	226-52	대	48	48	공주시		-	-	-
273	유구읍 석남리	226-53	대	115	115	공주시		-	-	-
274	유구읍 석남리	226-6	대	261	261	국(국토교통부)		-	-	-
275	유구읍 석남리	226-44	도	78	78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76	유구읍 석남리	226-43	도	75	75	국(국토교통부)		-	-	-
277	유구읍 석남리	226-5	대	61	13	박00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12동 1804호 (소사동 평택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	-	-
278	유구읍 석남리	226-23	대	53	13	공주시		-	-	-
279	유구읍 석남리	226-24	대	90	15	공주시		-	-	-
280	유구읍 석남리	226-55	대	66	66	공주시		-	-	-
281	유구읍 석남리	226-26	대	31	1	공주시		-	-	-
282	유구읍 석남리	226-54	대	34	30	공주시		-	-	-
283	유구읍 석남리	226-33	대	15	11	국(국토교통부)		-	-	-
284	유구읍 석남리	226-10	도	276	225	국(국토교통부)		-	-	-
285	유구읍 석남리	226-7	대	264	253	국(국토교통부)		-	-	-
286	유구읍 석남리	226-8	대	565	505	국(국토교통부)		-	-	-
287	유구읍 석남리	224-3	대	452	22	공주시		-	-	-
288	유구읍 석남리	224-5	대	229	3	공주시		-	-	-
289	유구읍 석남리	438	도	4,235	77	국(국토교통부)		-	-	-
290	유구읍 석남리	225-1	도	120	120	공주시		-	-	-
291	유구읍 석남리	225-3	대	133	109	공주시		-	-	-
292	유구읍 석남리	225-2	대	79	75	공주시		-	-	-
293	유구읍 석남리	225-4	도	45	45	국(국토교통부)		-	-	-
294	유구읍 석남리	205-1	도	76	76	공주시		-	-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295	유구읍 석남리	205-3	도	27	27	공주시		-	-	-
296	유구읍 석남리	205-2	전	294	108	공주시		-	-	-
297	유구읍 석남리	206	대	231	96	임00	교동 3의105	-	-	-
298	유구읍 석남리	183	천	258	179	고00	신관동 286 주공아파트 301-305	-	-	-
299	유구읍 석남리	37-8	대	342	14			-	-	-
300	유구읍 녹천리	26-21	대	776	158	진000	석남리	-	-	-

※ 위 토지 내 지장물 포함

공주시 공고 제2025-77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5. 2. 11. 시행)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경조사휴가 사항 삭제하고,
- 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2024. 11. 29.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별표 4) 개정(안 제15조제1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동규정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의 기준과 중복되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 출산, 본인 입양에 관한 항목 삭제

나. 자녀돌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안 제15조제14항제4호)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육아시간 전·후 시간외 근무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육아시간과 동일한 취지로 시행 중인 자녀돌봄시간(9~10세) 사용일에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항목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3. 17. ~ 2025. 4. 7.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41) 840 - 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32552
- 전화 : (041) 840-2233, 팩스 : (041) 840-2307, 전자우편 : sehee999@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서무팀 (☎ 041-840-2233)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07, 전자우편 : sehee999@korea.kr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4호 후단 중 “수 없으며,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를 “수”로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 별 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이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 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그 밖의 결혼, 출산, 사망, 입양 등 경조사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이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⑬ (생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⑭ (생략)	⑭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4. ----- ----- ----- ----- -----수----- ----- -----.																								
[별표4]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 제1항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 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 rowspan="3">결 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tr><td>출 산</td><td>배우자</td><td>10 (한 번에)</td></tr></table>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결 혼</td><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r><tr><td rowspan="2">사 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table>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
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
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그 밖의 결혼, 출산,
사망, 입양 등 경조사 휴가일수
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
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변경·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02. 28.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길 295 외 12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5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4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5. 02. 28.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20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길 295	2025 0228	신규	2010 0112	장원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장원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572-1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1127-5	2025 0228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27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송정길 115-27	2025 0228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158-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할미당길 53-6	2025 0228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창리 220-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산수길 22	2025 0228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266-2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266-2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21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2103	2025.02.26	소유자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 정정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5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55	2025.02.26	소유자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 정정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5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55	2025.02.26	소유자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 정정 추가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5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55	2025.02.26	소유자 신청에 의한 관련지번 정정 추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9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창암길 3-5	2025.02.2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354-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윗대실2길 4	2025.02.2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소라티길 2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3-4	2025.02.2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20-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산수길 20-1	2025.02.25	소유자 신청에 의한 말소

2025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고시

수도법 제38조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에 적용되는 『2025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내역 : 붙임참고

□ 적용범위

- 급수구경 : D13mm ~ D400mm
- 적용공사 : 급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 급수공사 시공은 공주시장(위탁사업)이 발주하며, 공사비는 수도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 관리 책임은 상수도 배수관부터 계량기 보호통(계량기 포함)까지는 공주시, 보호통 이후 시설은 수도사용자에 있다.
- 상기 조항에 의거 급수신청자는 급수승인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계량기 보호통(계량기 포함)까지는 준공과 함께 시에 기부된 것으로 본다.
- 본 정액제는 기 매설되어있는 상수도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계량기 보호통(계량기 포함) 설치까지 적용되며, 보호통 설치 후 가정인입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별도 시행하여야 한다.

□ 열람장소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사무실

□ 적용기간 : 2025.03.05.(고시일로부터) ~ 다음 고시일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1-840-7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공주원로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금흥동 170-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 공주원로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3. 17.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7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 사업의 명칭 : 공주원로원 주간보호센터 증축공사

3. 사업의 내용

○ 사업규모 : 시설면적 : A=19,590㎡

주간보호센터 증축 (연면적 증) 6.84㎡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9,590.00㎡	
건축면적	3,888.00㎡	변경없음
연면적	(당초) 11,431.32㎡ (변경) 11,438.16㎡	증 6.84㎡
용적률산정연면적	(당초) 9,969.41㎡ (변경) 9,976.25㎡	증 6.84㎡
건폐율	19.84 % (법정:20%)	
용적률	(당초) 50.89 % (법정:80%) (변경) 50.92 % (법정:80%)	증 0.03%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표 민경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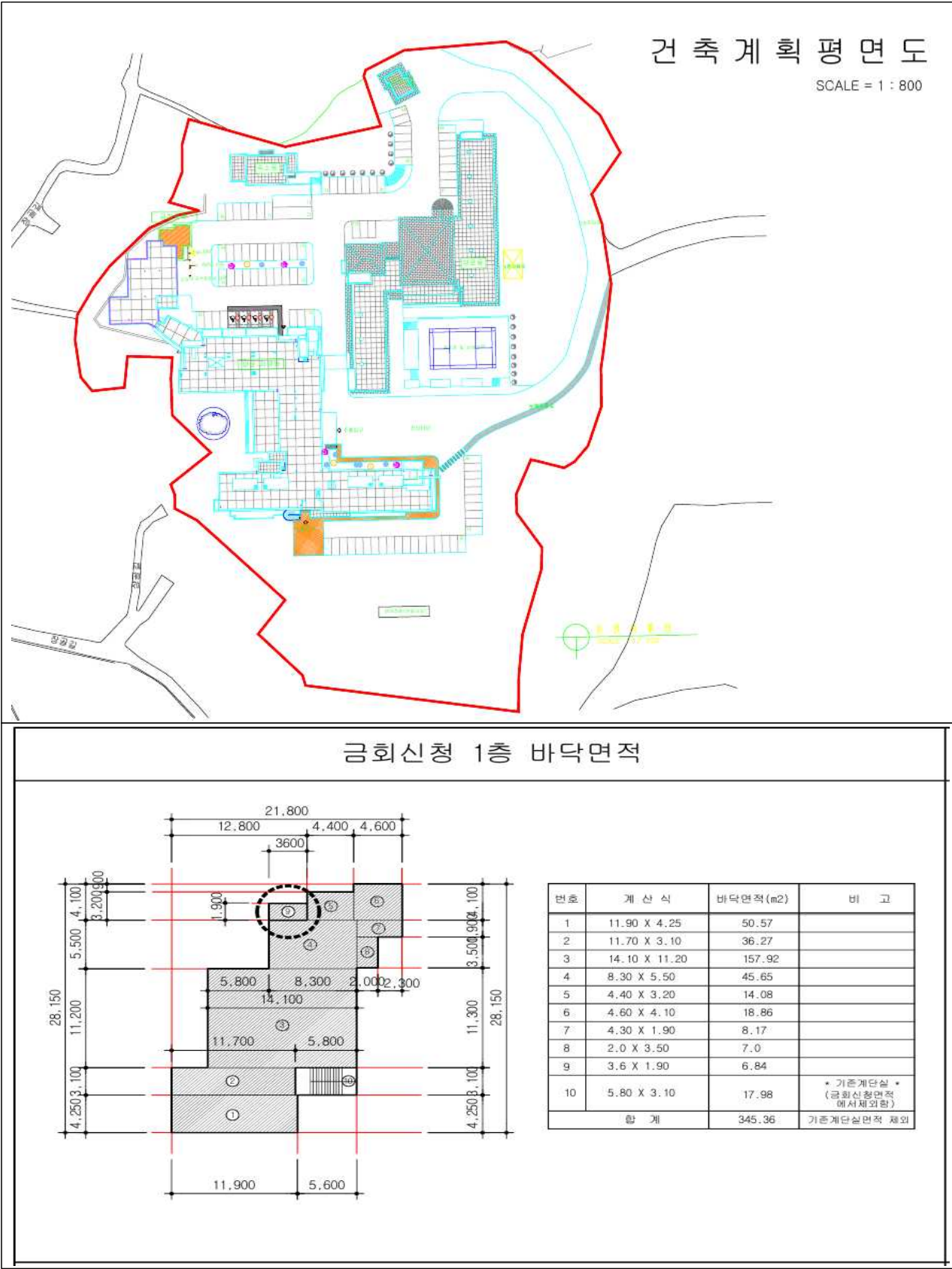
○ 2024년 4월 11일 ~ 2026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공주시 금홍동	170-2	대	11,386	11,3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사회복지 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				
	170-1	대	1,835	1,835						
	산16-7	대	165	165						
	산16-5	대	5,543	5,543						
	170-4	대	661	661						
	5 필지		19,590	19,590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자료(관련 도면)



공주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03. 06.

공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25. 03. 06.
2.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4. 변경사유 : 주도로 도로구간 변경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 공간주소팀
(☎041-840-82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구간 (주도로 변경 설정) 변경 조서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위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변경 전	음청동길	계룡면 금대리 474	계룡면 금대리 산1-1	도면참조	267	2	길	20	1	28	-	계룡면
변경 후	음청동길	계룡면 금대리 474	계룡면 금대리 산1-1	도면참조	386	2	길	20	1	42	주도로 변경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03. 07.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고북로 114-65 외 12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3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5. 03. 07.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16-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고북로 114-65	2025 0307	신규	2010 0302	공주시 도신리와 연기군 고북저수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특성 조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17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꽃배길 5	2025 0307	신규	2010 0112	진달래가 바위에 많이 피어서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26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청소길 10	2025 0307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37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716-10	2025 0307	신규	2010 0112	주봉~이인 가는길 도로 옆에 검바위라는 유적물이 있어 유물의 명칭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07-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역골2길 24	2025 0307	신규	2010 0112	단평역이 있을때 역마를 먹이던 골짜기에 마을이 생기자 말을 먹이던 골짜기라 하여 역골2길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평소리 339-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평소평촌길 9-109	2025 0307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과 들에 마을이 있다하여 유래된 평촌길을 혼합 활용	
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3-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109	2025 0307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22-52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1077-28 (석장리동)	2025 0307	신규	2009 0825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 명 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63-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지계실길 14	2025 0307	신규	2010 0112	지형이 지계문과 같다하여 지계실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205-2, 205-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연미산고개길 29	2025 0307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79, 27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머리길 14-15	2025 0307	신규	2024 0816	옥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성두리 또는 성두라 하여 성머리길로 부여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76-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터길 3-1	2025 0307	신규	2010 0112	마을 안으로 터를 잡았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산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음청동길 35	2025 0307	신규	2025 0306	예전에 산을 넘을 때 적적하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넘어다녀 소리 음자를 써서 음청동이라 불렀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76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명칭 :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공주시 월미동, 우성면 귀산리 일원
- 사업면적 : 66,273m²(L=1.04km)
- 사업규모 : 지방하천(반촌천) 축제 및 보축 2.02km,
보 및 낙차공 2개소, 교량 2개소, 펌프장 1개소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4년 05월
- 준공예정일 : 2026년 06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적(㎡)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반촌1	반촌천	지방 하천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71-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4-1	귀산교	1.04	21~61	60,584		

■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촌1	지방하천 (반촌천)	• 지방하천(반촌천) 신설 - 연장 : 1.04km - 폭원 : 21~61m - 면적 : 60,584㎡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에 의거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 계획에 따른 반촌천 하천구역 내 방재시설 (하천)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1/5,000)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면적	사업기간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71-1 ~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4-1	-축제 및 보축 2.02km -보 및 낙차공 2개소 -교량 2개소 -펌프장 1개소 등	60,584㎡	2024년 05월 ~ 2026년 06월

■시행자 : 공주시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게재생략(붙임의 토지조서로 갈음)

7.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지형도면 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공주시청 안전총괄과(실시설계), 도시정책과(지형도면) 비치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총괄과(041-840-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공 사 명 :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71-1	천	925	176	국	국토교통부				
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9-5	구	488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1-2	답	190	13	국	국토교통부				
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2-1	답	746	70	조*윤	서울 강서구 등촌동 ***_**				
5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2-2	답	378	34	조*윤	서울 강서구 염창동 ***_** 1층-가호				
6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2-3	답	902	58	오*란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5길 ** ***동 ****호				
7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3	답	1,880	148	오*란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5길 ** ***동 ****호				
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4-1	답	1,566	147	**오씨**** 파종중	월미동 ***				
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4-2	답	661	58	김*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회동1길 **				
1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5-1	답	1,833	294	김*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회동1길 **				
1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5-2	답	545	127	오*균	공주시월미동***				
1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71-2	천	4,272	4,272	국	국토교통부				
1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96	답	2,405	853	오*균	공주시월미동***				
1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9-10	구	706	3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10	답	2,520	742	임*미	충청남도 공주시 월성산1길 *** *동 ***호				
16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11-2	도	923	217	국	국토교통부				
17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9-11	구	754	16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71-3	천	732	502	국	국토교통부				
1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23-5	답	105	20	국	국토교통부				
2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23-2	답	812	214	오*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10길 ** ***동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0-1	답	637	637	공	충청남도				
2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0	답	2,128	54	오*교	충청남도 공주시 연미산길 ***				
2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71-4	천	499	499	국	국토교통부				
2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1-1	답	674	674	이*주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동 ****호				
25	공주시 월미동	210-10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26	공주시 월미동	64-1	구	290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공주시 월미동	63	천	5,060	4,472	국	국토교통부				
28	공주시 월미동	210-5	답	651	312	오*배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				
29	공주시 월미동	211-3	도	232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공주시 월미동	215-3	답	2,985	102	노*선	공주군우성면목천리***				
31	공주시 월미동	216-1	답	1,185	282	노*선	공주군우성면목천리***				
32	공주시 월미동	216-2	답	1,485	470	박*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33	공주시 월미동	216-3	답	2,230	1,220	박*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34	공주시 월미동	223-2	답	2,020	97	박*혁	중동 ***				
35	공주시 월미동	223-3	답	2,695	407	송*동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				
36	공주시 월미동	224-1	답	1,140	150	오*인	중동 ***				
37	공주시 월미동	224-2	답	1,105	128	노*권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 ***호				
38	공주시 월미동	224-3	답	1,580	183	*오씨**파 문중	***				
39	공주시 월미동	225-3	답	820	126	*오씨**파 문중	***				
40	공주시 월미동	225-4	답	1,085	393	국	기획재정부				
41	공주시 월미동	64-2	구	7,463	1,948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공주시 월미동	413	도	2,853	34	국	국토교통부				
43	공주시 월미동	100-2	도	66	66	공	공주시				
44	공주시 월미동	100-1	창	2,530	134	김*생	충청남도 공주시 고상아리1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5	공주시 월미동	61	답	2,808	303	김*례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안골길 ***				
46	공주시 월미동	60-6	답	1,500	95	오*식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안골길 **				
47	공주시 월미동	60-9	답	585	38	오*식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안골길 **				
48	공주시 월미동	60-8	도	1,530	566	국	건설교통부				
49	공주시 월미동	60-4	도	7	7	국	국토교통부				
50	공주시 월미동	60-3	도	23	23	오*만	***				
51	공주시 월미동	60-5	도	5,230	1,438	국	건설교통부				
52	공주시 월미동	60-7	도	2,274	116	국	건설교통부				
53	공주시 월미동	60-10	답	299	299	이*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나무골길 **				
54	공주시 월미동	409	구	6,860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공주시 월미동	58-19	임	7	7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56	공주시 월미동	58-20	답	323	323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57	공주시 월미동	58-16	답	45	45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58	공주시 월미동	58-14	임	272	272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59	공주시 월미동	58-15	임	22	22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60	공주시 월미동	58-18	창	175	175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61	공주시 월미동	58-2	대	232	232	박*남	***				
62	공주시 월미동	58-13	대	307	307	박*남	***				
63	공주시 월미동	58-17	창	129	129	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동 ****호				
64	공주시 월미동	58-7	도	1,169	5	국	건설교통부				
65	공주시 월미동	58-8	도	389	2	국	건설교통부 외1				
66	공주시 월미동	58-1	도	417	142	국	건설교통부				
67	공주시 월미동	402	천	22,595	8,518	국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1	답	696	84	이*주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동 ****호				
6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9-12	구	5,737	1,288	국	농림축산식품부				
7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2	도	808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8-2	답	689	689	이*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14번길 ***				
7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8-1	답	277	277	공	충청남도				
7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42	도	233	233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8	답	949	39	이*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14번길 ***				
75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6-1	답	265	34	공	공주시				
76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81-3	답	89	4	김*근	***				
77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7-5	답	12	12	이*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14번길 ***				
7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7-3	답	38	31	공	공주시				
7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7-4	답	14	14	공	공주시				
8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37-6	답	77	77	이*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				
8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9-2	도	215	215	오*택	**				
8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9-3	답	77	54	공	공주시				
8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9-4	답	29	29	공	충청남도				
8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8-2	도	344	344	공	공주시				
85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8-4	답	281	281	공	공주시				
86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8-5	답	77	77	공	공주시				
87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8-6	답	273	273	노*곤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				
8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73	도	2,872	1,419	국	국토교통부				
8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7-4	답	675	658	공	공주시				
9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7	답	3,527	58	미지번	미지번				
9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7-5	답	912	912	**노씨** *문중	귀산리**				
9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7-1	답	15	15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5-1	답	27	27	국	국토교통부				
9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5-2	답	235	235	김*덕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24-29,***동 ***호				
95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6	답	1,792	103	이*명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7, ***동 ****호				
96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6-2	답	242	242	이*명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7, ***동 ****호				
97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6-3	답	1	1	이*명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7, ***동 ****호				
9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6-1	답	2,015	1,998	국	국토교통부				
9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274-2	천	17,264	13,513	국	국토교통부				
10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68	답	4,301	3,527	국	국토교통부				
10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1-1	답	213	213	국	국토교통부				
10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1-2	답	21	21	공	충청남도				
10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69-2	답	1	1	박*윤	대전 유성구 장대동 *** ***_***				
104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69-1	답	160	149	국	국토교통부				
105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3-1	답	3,231	2,859	국	국토교통부				
106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1-4	답	15	15	국	국토교통부				
107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1-10	답	6	6	백*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 ***_***				
108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1-6	답	56	12	국	국토교통부				
109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4-1	도	2,916	656	국	국토교통부				
110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5-1	도	4,298	54	국	국토교통부				
111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54-2	답	2,466	653	국	국토교통부				
112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67	답	4,043	411	국	국토교통부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 3. 7.)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임 달 회 인

2025년 3월 17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16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당해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회기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3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예고(이하“입법예고”라 한다)”를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예고”를 “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법예고 필요한”을 “예고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법령상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건은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21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상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후3일”을 “후 3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때,”를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기명투표(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표결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표결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 시마다 정하는 시간 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정하는 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표결의 종료 선포) 의장은 제44조에 따른 표결이 완료된 경우 그 표결의 종료를 선포한다.

제45조 중 “때”를 “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거수표결”을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정할”을 “인정한”으로 한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7조의 제목 “(투표절차)”를 “(무기명투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으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를 “(회의록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개하지 아니한”을 “비공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부 및 공개되는”을 “공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6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4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준용)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예산안 및 결산 심사”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예산안 심의)”를 “(예산안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안이”를 “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로, “후 본회의”를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로 한다.

제71조 중 “의회”를 “본회의”로 한다.

제72조 중 “지체없이”를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로 한다.

제72조의2 전단 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한다.

제8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1조 중 “징계”를 “의원 징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u><신 설></u> ④ (생략)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당해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회기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 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3일 전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 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 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u>예고</u> (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u>입법예고</u> 기간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 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 ----- ----- ----- ----- ----- <u>예고</u> ----- -----. ② <u>예고</u>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③ -----
----- 예고에 필요한 -----

--.

제20조의3(법령상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건은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상정) ① -----

----- 소관 상임위원회 -----
-----.

있다.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 회의장 안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종이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 설>

---.

② -----
----- 후 3일-----

---. -----

---- 아니한다.

③ -----

----- 소관 상임위원회-----
회-----.

제44조(표결의 참가) ① -- 때에

----- <단서 삭제>

② 무기명투표(투표용지에 의한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표결의 종료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표결

<신 설>

<신 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사를 변경
할 수 없다.

제46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
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
1.12.15.)(후단 삭제 2023.6.15.)

<신 설>

의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
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
으로 본다.

③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 시마다 정하는 시
간 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석한 의원이 정하는 시간 내
에 표결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
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표결의 종료 선포) 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표결이 완
료된 경우 그 표결의 종료를 선
포한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
----- 때에 -----
-----.

제46조(표결방법) ① -----

-----.
----- 기립 또
는 거수표결-----
----- <후단 삭제>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록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기록한다. (후단 삭제 2021.12.15.)(후단 신설 2021.12.15.)

제47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④ (생략)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투표로 표결한다.

③ ----- 인
----- 정한 -----
-----.
-----.

제47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원
중-----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공무원 및
-----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
부터 5일 이내에 -----
-----.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
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
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전
문 개정 2021.12.15.)

②·③ (생략)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
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
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
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
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
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
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회의록의 공개) ① -----

-----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비공개 -----
-----.

-- 공개되는 -----
-----.

<삭제>

제53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
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
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 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8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7조의2(준용)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제68조(예산안 심사) ----- 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

-----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
-----.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 본
회의-----

-----.

제72조(결산의 심사) -----
-----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

-----.

관계 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